

춘천 동문 디 이스트 어반포레 입주자 모집공고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입주자모집공고일 포함) 종전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해당 주택의 순위확인서 발급 및 청약신청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지 주요정보** (분양문의) 1588-0654

주택유형	해당지역	기타지역		규제지역여부
민영	춘천시 6개월 이상 거주자 (25.01.25. 이전부터 계속 거주)	춘천시 6개월 미만 거주자 및 강원특별자치도 거주자		비규제지역
재당첨제한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분양가상한제	택지유형
없음	없음	없음	미적용	민간택지

구분	입주자모집공고일	특별공급 접수일	일반공급 1순위 접수일	일반공급 2순위 접수일	당첨자발표일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정	25.07.25.(금)	25.08.04.(월)	25.08.05.(화)	25.08.06.(수)	25.08.12.(화)	25.08.18.(월)~ 25.08.20.(수)	25.08.25.(월)~ 25.08.27.(수)

공통 유의사항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홈 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5.06.30.**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2024.10.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4.10.01.부터 사전당첨자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당첨자 및 그 세대원이 다른 주택(APT, 불법행위재공급, 규제지역 무순위)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사전당첨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여 사전청약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특별공급					일반공급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1순위	2순위
청약통장 자격요건	6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1순위(6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가입
세대주 요건	-	-	-	필요	-	-	-

소득 또는 자산기준	-	-	적용	-	적용	-	-
<p>※ 단, 기관추천 특별공급 중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p> <p>※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분</p> <p>※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p>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하여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청약신청 내용과 실제 청약자격의 일치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에 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청약홈 및 LH청약플러스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에 한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또는 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당첨 무효(예비입주자 지위 무효)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각 1건씩 중복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간 또는 일반공급간 중복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됩니다. (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시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사용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하고,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분은 당청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됩니다.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 가. 주택공급신청자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한국부동산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한 공급유형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급유형	당첨자 선정	예비입주자 선정	동호수 결정
특별공급	유형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추첨으로 선정	특별공급/일반공급 구분 없이 주택형별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
일반공급	순위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1순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가점순으로 선정(동점 시 추첨) (2순위)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입주자 수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 유형별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다른 특별공급 유형의 청약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기관추천 예비대상자 포함)을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이후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주택형별 특별공급 청약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주택형별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2순위 접수분은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2.06.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 수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됩니다.
- 특별공급 잔여물량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일반공급 잔여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이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 발표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당첨 내역은 무효 처리됩니다.
-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chuncheon-dmpt.co.kr/)에 공개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고,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함), 최하층 주택의 분양금액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금액보다 높은 경우는 최하층 우선배정하지 않습니다.
 -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있는 경우에는 청약 시 최하층의 주택 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합니다.
 -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과 제3호에 해당하는 분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 최하층 우선배정 신청자가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보다 많은 경우 최하층이 아닌 층을 배정받을 수 있으며, 적은 경우에는 최하층 우선배정 미신청자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는 불인정하나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3)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청약통장 관련 기준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한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이거나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의 신청가능 주택규모 변경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신청가능)
 - 주택청약종합저축 예치금 충족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 종전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전환개설 완료 시 청약 신청가능
- * 종전통장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하여 청약하는 경우,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유형은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순위를 산정합니다.

(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민영주택 청약 시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순위산정(단 국민주택 청약 시 기존 청약통장이입일을 기준으로 순위산정)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아래와 같이 청약신청 유형별 사용 가능한 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유형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카카오인증서
APT	O		O				

※ 단, APT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 중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유형의 청약신청자는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만 사용가능합니다.

II 단지 유의사항

-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5.07.25.(금)**입니다. (청약자격 요건 중 기간, 나이, 지역우선공급 등의 판단기준일)
- 본 사업은 시행위탁자인 '주식회사 씨앤위'는 시행수탁자인 '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에 시행을 위탁해 진행하는 관리형토지신탁사업으로서 실질적인 사업주체는 시행위탁자인 '주식회사 씨앤위'이며, '동문건설 주식회사'는 시공사로서의 의무를 부담하며, '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는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의 시행수탁자로서 의무를 부담합니다.
- 본 주택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춘천시에서 거주하거나 강원특별자치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신청자 중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춘천시 6개월 이상 거주자가(2025.01.25 이전부터 계속 거주) 우선합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분	입주자모집공고	특별공급 기관추천/신혼부부/다자녀/노부모/생애최초	일반공급 1순위	일반공급 2순위	당첨자발표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정	25.07.25.(금)	25.08.04.(월)	25.08.05.(화)	25.08.06.(수)	25.08.12.(화)	25.08.18.(월)~ 25.08.20.(수)	25.08.25.(월)~ 25.08.27.(수)
방법	청약홈 문화일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사업주체 견본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청약통장 가입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C·모바일) 청약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주체 견본주택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온의동 308-6)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사업주체 견본주택 현장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불가

※ 모바일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라며,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비수도권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되더라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으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해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도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기타 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춘천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6억원 이상의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서 및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의 신고를 의무화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전매제한은 최초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적용되며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전매제한기간	없음	없음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투기적발자 처벌(「주택법」 제64조, 제65조 및 제101조)
 -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 「주택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법 제6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한 자 및 「주택법」 제65조 제1항을 위반한 자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법」 제64조 제1항 및 제65조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10년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의 입주자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 이와 관련하여 법원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법 위반 여부 확인 등을 위한 개인정보 요구 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 최초 계약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분양계약이 취소되어 분양권 매수자(전매포함)가 피해를 보게 되더라도 사업주체의 책임이 없습니다.

III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춘천시 **공동주택과 - 20095호(2025.7.24.)**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면 만천리 811-21번지 외 10필지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4층, 지상 29층 6개동 총 569세대
 [특별공급 310세대(기관추천 56세대, 다자녀가구 56세대, 신혼부부 130세대, 노부모부양 17세대, 생애최초 51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주차대수** : 총 858대(아파트 : 855대 / 근린생활시설 : 3대)
- **입주시기** : 2028년 10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주택 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주택공급면적(m ²)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공급 세대수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기관 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계		
2025000291	01	059.8077	59	59.8077	21.6785	81.4862	45.4429	126.9291	32.2884	33	3	3	8	1	3	18	15	2
	02	084.8366A	84A	84.8366	28.5564	113.3930	64.4604	177.8534	45.8008	419	42	42	95	12	38	229	190	18
	03	084.9526B	84B	84.9526	28.6748	113.6274	64.5485	178.1759	45.8634	67	7	7	15	2	6	37	30	3
	04	084.9570C	84C	84.9570	28.2751	113.2321	64.5519	177.7840	45.8658	25	2	2	6	1	2	13	12	1
	05	084.9694D	84D	84.9694	29.3534	114.3228	64.5614	178.8842	45.8725	25	2	2	6	1	2	13	12	1
	합 계										569	56	56	130	17	51	310	259

- 주거 전용 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 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 공용면적은 주거 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경로당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나,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 공용면적 및 계약면적은 타입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주택형 표기 방식이 기존(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나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 공급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란은 입주자 모집공고 상 주택형(m²)으로 기재하니 평형으로 오해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주택 규모 표시 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 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m²)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평형 환산방법 : 공급면적(m²) × 0.3025 또는 공급면적(m²) ÷ 3.3058]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 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의 지상층 면적이며, 기타 공용면적은 관리사무소, 경로당, 어린이집 등 주민공동시설, 보안 및 설비 관련시설, 지하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기타 지하층 면적입니다.
- 각 세대별 주거 공용면적은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된 것으로 계약상 주거 공용면적이 당해 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고, 동일 주택형의 해당세대 주거 공용부분도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 면적은 소수점 4째자리까지 표현되므로 면적 계산상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단수조정 방식 차이로 인하여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는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법에 의거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준공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시 설계, 인허가 변경, 지적확정 측량 및 공부정리 결과 등에 따른 대지면적 확정, 법령에 따른 공부 정리 절차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소수점 이하의 면적변경에 따른 분양가 정산은 없습니다.
- 본 아파트의 서비스면적(발코니 등)은 세대별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상기 공급 세대의 청약 접수는 동·층·호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청약 순위별로 접수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호수가 배정됩니다.

특별공급 공급세대수

(단위 : 세대, 원)

구 분(약식표기)	59	84A	84B	84C	84D	합 계	
기관추천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	9	2	-	-	11
	장기복무 제대군인	-	9	1	1	-	11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1	8	1	-	1	11
	장애인	1	8	2	-	1	12
	중소기업 근로자	1	8	1	1	-	11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3	42	7	2	2	56	
신혼부부 특별공급	8	95	15	6	6	130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1	12	2	1	1	17	
생애최초 특별공급	3	38	6	2	2	51	
합 계	18	229	37	13	13	310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세대, 원)

약식 표기	공급 세대수	동	층 구분	해당 세대수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60%)						잔금(30%) 입주지정일		
					대지비	건축비	부가세	합계	1차	2차	1회(10%)	2회(10%)	3회(10%)	4회(10%)	5회(10%)	6회(10%)			
									계약시	30일 이내	2026.01.20	2026.07.20	2027.01.20	2027.08.20	2027.11.22	2028.03.20			
59	33	101동 1,2호	2~3층	4	88,722,400	270,477,600	-	359,200,000	10,000,000	25,920,000	35,920,000	35,920,000	35,920,000	35,920,000	35,920,000	35,920,000	35,920,000	107,760,000	
			4~5층	4	91,637,000	279,363,000	-	371,000,000	10,000,000	27,100,000	37,100,000	37,100,000	37,100,000	37,100,000	37,100,000	37,100,000	37,100,000	37,100,000	111,300,000
			6~10층	10	94,576,300	288,323,700	-	382,900,000	10,000,000	28,290,000	38,290,000	38,290,000	38,290,000	38,290,000	38,290,000	38,290,000	38,290,000	38,290,000	114,870,000
			11~19층	15	97,490,900	297,209,100	-	394,700,000	10,000,000	29,470,000	39,470,000	39,470,000	39,470,000	39,470,000	39,470,000	39,470,000	39,470,000	39,470,000	118,410,000
84A	419	102동 1,3호	2~3층	12	122,265,000	372,735,000	-	495,000,000	10,000,000	39,500,000	49,500,000	49,500,000	49,500,000	49,500,000	49,500,000	49,500,000	49,500,000	148,500,000	
			4~5층	12	126,291,100	385,008,900	-	511,300,000	10,000,000	41,130,000	51,130,000	51,130,000	51,130,000	51,130,000	51,130,000	51,130,000	51,130,000	153,390,000	
			6~10층	30	130,317,200	397,282,800	-	527,600,000	10,000,000	42,760,000	52,760,000	52,760,000	52,760,000	52,760,000	52,760,000	52,760,000	52,760,000	158,280,000	
			11~20층	59	134,368,000	409,632,000	-	544,000,000	10,000,000	44,400,000	54,400,000	54,400,000	54,400,000	54,400,000	54,400,000	54,400,000	54,400,000	54,400,000	163,200,000
		105동 5,6호	2~3층	19	137,035,600	417,764,400	-	554,800,000	10,000,000	45,480,000	55,480,000	55,480,000	55,480,000	55,480,000	55,480,000	55,480,000	55,480,000	55,480,000	166,440,000
			4~5층	6	123,500,000	376,500,000	-	500,000,000	10,000,000	40,000,000	50,000,000	50,000,000	50,000,000	50,000,000	50,000,000	50,000,000	50,000,000	50,000,000	150,000,000
			6~10층	8	127,575,500	388,924,500	-	516,500,000	10,000,000	41,650,000	51,650,000	51,650,000	51,650,000	51,650,000	51,650,000	51,650,000	51,650,000	51,650,000	154,950,000
			11~20층	20	131,651,000	401,349,000	-	533,000,000	10,000,000	43,300,000	53,300,000	53,300,000	53,300,000	53,300,000	53,300,000	53,300,000	53,300,000	53,300,000	159,900,000
		106동 1,2호	2~3층	39	135,701,800	413,698,200	-	549,400,000	10,000,000	44,940,000	54,940,000	54,940,000	54,940,000	54,940,000	54,940,000	54,940,000	54,940,000	54,940,000	164,820,000
			4~5층	1	138,418,800	421,981,200	-	560,400,000	10,000,000	46,040,000	56,040,000	56,040,000	56,040,000	56,040,000	56,040,000	56,040,000	56,040,000	56,040,000	168,120,000
			6~10층	8	120,412,500	367,087,500	-	487,500,000	10,000,000	38,750,000	48,750,000	48,750,000	48,750,000	48,750,000	48,750,000	48,750,000	48,750,000	48,750,000	146,250,000
			11~20층	8	124,389,200	379,210,800	-	503,600,000	10,000,000	40,360,000	50,360,000	50,360,000	50,360,000	50,360,000	50,360,000	50,360,000	50,360,000	50,360,000	151,080,000
		106동 4,5호	2~3층	20	128,341,200	391,258,800	-	519,600,000	10,000,000	41,960,000	51,960,000	51,960,000	51,960,000	51,960,000	51,960,000	51,960,000	51,960,000	51,960,000	155,880,000
			4~5층	40	132,317,900	403,382,100	-	535,700,000	10,000,000	43,570,000	53,570,000	53,570,000	53,570,000	53,570,000	53,570,000	53,570,000	53,570,000	53,570,000	160,710,000
			6~10층	33	134,960,800	411,439,200	-	546,400,000	10,000,000	44,640,000	54,640,000	54,640,000	54,640,000	54,640,000	54,640,000	54,640,000	54,640,000	54,640,000	163,920,000
			11~20층	4	119,202,200	363,397,800	-	482,600,000	10,000,000	38,260,000	48,260,000	48,260,000	48,260,000	48,260,000	48,260,000	48,260,000	48,260,000	48,260,000	144,780,000

	1,2호	4~5층	4	123,129,500	375,370,500	-	498,500,000	10,000,000	39,850,000	49,850,000	49,850,000	49,850,000	49,850,000	49,850,000	49,850,000	49,850,000	149,550,000	
		6~10층	10	127,056,800	387,343,200	-	514,400,000	10,000,000	41,440,000	51,440,000	51,440,000	51,440,000	51,440,000	51,440,000	51,440,000	51,440,000	51,440,000	154,320,000
		11~20층	20	131,008,800	399,391,200	-	530,400,000	10,000,000	43,040,000	53,040,000	53,040,000	53,040,000	53,040,000	53,040,000	53,040,000	53,040,000	53,040,000	159,120,000
		21층이상	16	133,627,000	407,373,000	-	541,000,000	10,000,000	44,100,000	54,100,000	54,100,000	54,100,000	54,100,000	54,100,000	54,100,000	54,100,000	54,100,000	162,300,000
	103동 4호	1층	1	121,993,300	371,906,700	-	493,900,000	10,000,000	39,390,000	49,390,000	49,390,000	49,390,000	49,390,000	49,390,000	49,390,000	49,390,000	49,390,000	148,170,000
		2~3층	4	124,735,000	380,265,000	-	505,000,000	10,000,000	40,500,000	50,500,000	50,500,000	50,500,000	50,500,000	50,500,000	50,500,000	50,500,000	50,500,000	151,500,000
		4~5층	4	128,835,200	392,764,800	-	521,600,000	10,000,000	42,160,000	52,160,000	52,160,000	52,160,000	52,160,000	52,160,000	52,160,000	52,160,000	52,160,000	156,480,000
		6~10층	10	132,960,100	405,339,900	-	538,300,000	10,000,000	43,830,000	53,830,000	53,830,000	53,830,000	53,830,000	53,830,000	53,830,000	53,830,000	53,830,000	161,490,000
	106동 3호	11~20층	20	137,060,300	417,839,700	-	554,900,000	10,000,000	45,490,000	55,490,000	55,490,000	55,490,000	55,490,000	55,490,000	55,490,000	55,490,000	55,490,000	166,470,000
		21층이상	11	139,802,000	426,198,000	-	566,000,000	10,000,000	46,600,000	56,600,000	56,600,000	56,600,000	56,600,000	56,600,000	56,600,000	56,600,000	56,600,000	169,800,000
		2~3층	2	122,512,000	373,488,000	-	496,000,000	10,000,000	39,600,000	49,600,000	49,600,000	49,600,000	49,600,000	49,600,000	49,600,000	49,600,000	49,600,000	148,800,000
		4~5층	2	126,562,800	385,837,200	-	512,400,000	10,000,000	41,240,000	51,240,000	51,240,000	51,240,000	51,240,000	51,240,000	51,240,000	51,240,000	51,240,000	153,720,000
102동 2호	6~10층	5	130,588,900	398,111,100	-	528,700,000	10,000,000	42,870,000	52,870,000	52,870,000	52,870,000	52,870,000	52,870,000	52,870,000	52,870,000	52,870,000	158,610,000	
	11~19층	9	134,639,700	410,460,300	-	545,100,000	10,000,000	44,510,000	54,510,000	54,510,000	54,510,000	54,510,000	54,510,000	54,510,000	54,510,000	54,510,000	163,530,000	
	1층	1	121,030,000	368,970,000	-	490,000,000	10,000,000	39,000,000	49,000,000	49,000,000	49,000,000	49,000,000	49,000,000	49,000,000	49,000,000	49,000,000	147,000,000	
	2~3층	2	123,747,000	377,253,000	-	501,000,000	10,000,000	40,100,000	50,100,000	50,100,000	50,100,000	50,100,000	50,100,000	50,100,000	50,100,000	50,100,000	150,300,000	
102동 4호	4~5층	2	127,822,500	389,677,500	-	517,500,000	10,000,000	41,750,000	51,750,000	51,750,000	51,750,000	51,750,000	51,750,000	51,750,000	51,750,000	51,750,000	155,250,000	
	6~10층	5	131,922,700	402,177,300	-	534,100,000	10,000,000	43,410,000	53,410,000	53,410,000	53,410,000	53,410,000	53,410,000	53,410,000	53,410,000	53,410,000	160,230,000	
	11~20층	10	135,998,200	414,601,800	-	550,600,000	10,000,000	45,060,000	55,060,000	55,060,000	55,060,000	55,060,000	55,060,000	55,060,000	55,060,000	55,060,000	165,180,000	
	21층이상	1	138,715,200	422,884,800	-	561,600,000	10,000,000	46,160,000	56,160,000	56,160,000	56,160,000	56,160,000	56,160,000	56,160,000	56,160,000	56,160,000	168,480,000	
105동 3호	2~3층	2	120,659,500	367,840,500	-	488,500,000	10,000,000	38,850,000	48,850,000	48,850,000	48,850,000	48,850,000	48,850,000	48,850,000	48,850,000	48,850,000	146,550,000	
	4~5층	2	124,636,200	379,963,800	-	504,600,000	10,000,000	40,460,000	50,460,000	50,460,000	50,460,000	50,460,000	50,460,000	50,460,000	50,460,000	50,460,000	151,380,000	
	6~10층	5	128,612,900	392,087,100	-	520,700,000	10,000,000	42,070,000	52,070,000	52,070,000	52,070,000	52,070,000	52,070,000	52,070,000	52,070,000	52,070,000	156,210,000	
	11~20층	10	132,589,600	404,210,400	-	536,800,000	10,000,000	43,680,000	53,680,000	53,680,000	53,680,000	53,680,000	53,680,000	53,680,000	53,680,000	53,680,000	161,040,000	
21층이상	9	135,232,500	412,267,500	-	547,500,000	10,000,000	44,750,000	54,750,000	54,750,000	54,750,000	54,750,000	54,750,000	54,750,000	54,750,000	54,750,000	54,750,000	164,250,000	
84C	25	103동 3호	2~3층	2	119,646,800	364,753,200	-	484,400,000	10,000,000	38,440,000	48,440,000	48,440,000	48,440,000	48,440,000	48,440,000	48,440,000	48,440,000	145,320,000
			4~5층	2	123,598,800	376,801,200	-	500,400,000	10,000,000	40,040,000	50,040,000	50,040,000	50,040,000	50,040,000	50,040,000	50,040,000	50,040,000	150,120,000
			6~10층	5	127,526,100	388,773,900	-	516,300,000	10,000,000	41,630,000	51,630,000	51,630,000	51,630,000	51,630,000	51,630,000	51,630,000	51,630,000	154,890,000
			11~20층	10	131,478,100	400,821,900	-	532,300,000	10,000,000	43,230,000	53,230,000	53,230,000	53,230,000	53,230,000	53,230,000	53,230,000	53,230,000	159,690,000
21층이상	6	134,096,300	408,803,700	-	542,900,000	10,000,000	44,290,000	54,290,000	54,290,000	54,290,000	54,290,000	54,290,000	54,290,000	54,290,000	54,290,000	162,870,000		
84D	25	105동 4호	2~3층	2	123,253,000	375,747,000	-	499,000,000	10,000,000	39,900,000	49,900,000	49,900,000	49,900,000	49,900,000	49,900,000	49,900,000	49,900,000	149,700,000
			4~5층	2	127,328,500	388,171,500	-	515,500,000	10,000,000	41,550,000	51,550,000	51,550,000	51,550,000	51,550,000	51,550,000	51,550,000	51,550,000	154,650,000
			6~10층	5	131,379,300	400,520,700	-	531,900,000	10,000,000	43,190,000	53,190,000	53,190,000	53,190,000	53,190,000	53,190,000	53,190,000	53,190,000	159,570,000
			11~20층	10	135,454,800	412,945,200	-	548,400,000	10,000,000	44,840,000	54,840,000	54,840,000	54,840,000	54,840,000	54,840,000	54,840,000	54,840,000	54,840,000
21층이상	6	138,171,800	421,228,200	-	559,400,000	10,000,000	45,940,000	55,940,000	55,940,000	55,940,000	55,940,000	55,940,000	55,940,000	55,940,000	55,940,000	167,820,000		

※ 분양가 산정의 경우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에 따라 층을 구분하여 책정하였으며 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적용하여 층, 호수를 산정하였습니다.

- 주택 공급 신청 시 [주택형] 또는 [형]란은 입주자모집공고 상 주택형(㎡)으로 기재하니 평형으로 오해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평형환산방법 : 공급면적(㎡) ×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 주택형의 구분은 입주자 모집공고 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 홍보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될 수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통 유의사항

- 본 아파트는 사업주체가 주택형별, 층별, 향별 등으로 차등을 두어 분양금액을 책정하였습니다.
- 분양대금의 중도금 및 잔금을 약정된 납부일에 지급하여야 하며, 선납할인은 상기 중도금 약정일정에 따라 계산됨.(선납할인은 분양계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주택으로 상기 공급금액은 분양가 자율화에 따라 주택형별, 층별에 따라 차등을 두어 책정한 금액입니다.

- 상기 공급금액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주현관 등 주거 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주거공용면적, 지하주차장 및 지하피트 등 기타 공용면적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모두 소유권이전등기비용 통합취득세가 미포함된 금액입니다.
- 중도금은 해당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 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함)의 50%이상 투입된 때(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이상 되어야 한다)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로서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 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함) 또한, 연체료 납부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에도 연체료가 발생함으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로서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 (지상건축물을 포함한다) 를 신탁하는 경우는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봅니다.

IV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2025.03.3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특별공급 신청 요건 등에 관한 특례) 개정 사항

조항	특별공급 신청유형	내용	유의사항
제1항 (배우자의 혼인 전 이력 배제)	신혼부부 생애최초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	- 적용횟수 제한 없음
	생애최초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 (혼인 전 처분완료한 경우에 한함)	
제2항 (혼인특례)	신혼부부	청약신청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재당첨 제한, 특별공급 횟수 제한)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	- 혼인특례는 본인 기준 1회에 한하여 적용 가능
제3항 (출산특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24.6.19.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또는 '24.6.19. 이후 출생한 사람을 입양한 경우 포함)가 있는 경우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더라도 제55조에 따른 특별공급 횟수 제한에도 불구하고 청약신청 가능 → 이 경우, 특별공급의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에도 불구하고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신청 가능	- 출산특례는 세대 기준 1회에 한하여 적용 가능 - 특별공급 횟수 제한 외 다른 청약 제한사항은 배제할 수 없음 -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없는 경우 출산특례 적용 불가 -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 외의 세대원이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거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출산특례 적용 불가

		<p>* 기존주택 처분 조건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할 것 - 2.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에 관한 서류(「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4항 각 호)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할 것 - 3. 공급받은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을 완료할 것 <p>→ 이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공공주택 제외) 추천제 청약신청자의 부동산가액 산정 시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가액은 합산하지 않음</p>	
--	--	---	--

※ **혼인특례** 또는 **출산특례**를 사용하여 청약하려는 분은 **청약신청 시 특례 사용여부**를 선택하여야 하며, 청약신청 시 선택한 특례 사용여부는 **변경·취소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여 본 주택의 특별공급 입주자 및 추가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 없이 특별공급 당첨자 및 특례 사용자 명단** 관리하며 향후 **혼인특례 사용자** 본인은 **혼인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고, 출산특례 사용자** 속한 세대는 **출산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지 않아도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는 분이 착오에 의해 특례를 사용한 경우라 하더라도 **특례 사용 사실은 정정될 수 없으며, 특례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분**이 특례를 사용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당첨이 취소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혼인특례와 출산특례를 동시에** 사용하여 청약할 수 없습니다.

※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특별공급에 당첨된 분이 공급받은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까지 기존주택 처분 완료를 증명하지 못한 경우 공급계약이 취소되며, 입주가 불가합니다.

특별공급 공통사항

구 분	내 용	
공급기준	<p>■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및 제55조 의3을 적용하는 경우 특별공급 횟수 제한 예외)</p> <p>※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다만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할 수 있으며,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p>	
	구분	처리방법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p>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p> <p>※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p>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p>■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p> <p>■ 특별공급 당첨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p> <p>■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원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자격을 필요로 하는 특별공급 청약이 불가합니다.</p>	
무주택 요건	<p>■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청약통장 자격요건	<p>■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p> <p>- 기관추천(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p> <p>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p> <p>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p> <p>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p> <p>-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p> <p>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p> <p>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p> <p>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p>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춘천시 및 강원특별자치도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th> <th>특별시 및 부산광역시</th> <th>그 밖의 광역시</th> </tr> </thead> <tbody> <tr> <td>전용면적 85㎡ 이하</td> <td>200만원</td> <td>300만원</td> <td>250만원</td> </tr> <tr> <td>전용면적 102㎡ 이하</td> <td>300만원</td> <td>600만원</td> <td>400만원</td> </tr> <tr> <td>전용면적 135㎡ 이하</td> <td>400만원</td> <td>1,000만원</td> <td>700만원</td> </tr> <tr> <td>모든면적</td> <td>500만원</td> <td>1,500만원</td> <td>1,000만원</td> </tr> </tbody> </table>	구 분	춘천시 및 강원특별자치도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전용면적 85㎡ 이하	200만원	300만원	25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300만원	600만원	4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400만원	1,000만원	700만원	모든면적	500만원	1,500만원	1,000만원
	구 분	춘천시 및 강원특별자치도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전용면적 85㎡ 이하	200만원	300만원	25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300만원	600만원	4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400만원	1,000만원	700만원																		
모든면적	500만원	1,500만원	1,000만원																		
<p>※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p> <p>※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p>																					

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세대수의 10% 범위) : 56세대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해당 기관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단,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기관추천 특별공급 추천기관

기관추천특별공급 유형	추천 기관	청약통장 구비여부
국가유공자 등	강원서부 보훈지청 복지팀	청약통장 필요없음
장애인	강원특별자치도청 장애인 복지과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국군복지단 복지사업 운영과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해당요건을 갖춘 분
장기복무제대군인	강원서부 보훈지청 복지팀	
중소기업근로자	강원지방 중소기업창업 지원정책과	

기관추천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자격요건을 갖춘 분은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하므로 사업주체 및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대상자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확정대상자 및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분만 신청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청약접수일에 청약신청 완료해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되며 계약 불가)
-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분과 함께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되므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56세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춘천시**에 거주하거나 **강원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과거 주택을 소유하였다거나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가능함
- **만19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태아, 입양자녀 포함)이 있는 분**
 - 자녀는 민법상 미성년자를 말하며, 자녀가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 ※ 자녀수에는 태어나 입양자녀도 포함됨.(단, 임신 중에 있는 태어나 입양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에는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제3항에 의거 입주 전 불법 낙태 또는 파양한 경우에는 당첨 취소 및 부적격 처리됨)
 - ※ 임신부부 또는 입양부부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는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 여부 및 입양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임신부부의 임신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합니다.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 재혼으로 성이 다른 직계가 아닌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자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녀 또는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이혼, 재혼한 경우 공급신청자 본인의 자녀는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자녀수에 포함되며,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는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자녀수로 인정합니다.
 -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63호(2024.03.25.)]에 따릅니다.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배점 → ③미성년 자녀수 → ④청약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분 → ⑤추첨
-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춘천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춘천시 6개월 미만 거주자 및 강원특별자치도 거주자)
- **②배점**

배점항목	총배점	배점기준		비고
		기준	점수	
계	100			

미성년 자녀수(1)	40	4명 이상	40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3명	35	
		2명	25	
영유아 자녀수(2)	15	3명 이상	1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2명	10	
		1명	5	
세대구성(3)	5	3세대 이상	5	- 청약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부모 가족	5	- 청약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분
무주택기간(4)	20	10년 이상	20	- 배우자의 직계존속(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 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청약신청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해당 시·도 거주기간(5)	15	10년 이상	15	- 청약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해당시·도(강원특별자치도)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외의 경우 서울·경기·인천 전체를 해당 시·도로 봄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1년 이상 ~ 5년 미만	5	
입주자저축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순위확인서로 확인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23% 범위) : 130세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강원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인 분**

■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 출산은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 증명서 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 시 출산 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 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출산 관련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160호(2025.03.31.)]에 따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순위 → ③지역 → ④미성년 자녀수 → ⑤추첨

■ ①소득구분

단계	소득구분	내용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2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2단계	신생아 일반공급 (10%)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3단계	우선공급 (2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4단계	일반공급 (10%)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5단계	추첨공급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40% 초과하나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나, 2단계 신청자 중 낙첨자는 3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4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 1단계 및 2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②순위를 고려하지 않고 ③지역 → ④미성년 자녀수 → ⑤추첨의 순서에 따라 선정

※ 5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순위와 관계없이 해당지역 거주자(춘천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고,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

■ ②순위

순위	내용
1순위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
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

■ ③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춘천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춘천시 6개월 미만 거주자 및 강원특별자치도 거주자)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녀기준

- 자녀는 「민법」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를 포함

* 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 전에 출생신고한 경우

- (②순위 판단 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1순위 신청가능

-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청약신청자의 전혼자녀(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 또는 재혼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재혼 배우자의 전혼자녀(재혼 배우자가 이전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5.07.25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2024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소득구분		비율	소득금액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생아우선공급, 우선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이하	~7,205,312원	~8,578,088원	~9,031,048원	~9,733,086원	~10,435,124원	~11,137,162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초과 120% 이하	~8,646,374원	~10,293,706원	~10,837,258원	~11,679,703원	~12,522,149원	~13,364,594원
신생아일반공급, 일반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초과 140% 이하	7,205,313원~ 10,087,437원	8,578,089원~ 12,009,323원	9,031,049원~ 12,643,467원	9,733,087원~ 13,626,320원	10,435,125원~ 14,609,174원	11,137,163원~ 15,592,027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8,646,375원~ 11,528,499원	10,293,707원~ 13,724,941원	10,837,259원~ 14,449,677원	11,679,704원~ 15,572,938원	12,522,150원~ 16,696,198원	13,364,595원~ 17,819,459원
추첨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3.31억원) 충족	10,087,438원~	12,009,324원~	12,643,468원~	13,626,321원~	14,609,175원~	15,592,028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3.31억원) 충족	11,528,500원~	13,724,942원~	14,449,678원~	15,572,939원~	16,696,199원~	17,819,460원~

-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702,038) ×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 처리 또는 계약 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구분	금액	내용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건축물	<p>-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p>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건축물 종류</th> <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주택</td> <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 <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 </tr> <tr> <td>단독주택</td> <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 </tr> <tr> <td colspan="2">주택 외</td> <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 </tr> </tbody> </table>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토지	<p>-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p>-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p>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 공급 세대수의 3% 범위) : 17세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춘천시**에 거주하거나 강원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한 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부양'의 의미는 같은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을 의미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다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함.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라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해야 함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은 내용은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63호(2024.03.25.)]에 따릅니다.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춘천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춘천시 6개월 미만 거주자 및 강원특별자치도 거주자)

■ ②**가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가점제 적용기준)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기준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청약가점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부적격 당첨 처리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청약신청자에게 있음

- 가점 산정기준 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①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②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 시에는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산정 시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하지 않음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함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유의사항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
 -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생애최초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9% 범위) : 51세대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춘천시**에 거주하거나 강원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

- 모든 세대구성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함

※ (예외)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하였다가 혼인 전 처분한 이력은 배제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아래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분**

- 가.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청약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가 있는 분

- 나. 1인 가구(혼인 중이 아니면서 미혼인 자녀도 없는 분)

*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신청가능하며, '단독세대'와 '단독세대가 아닌 분'으로 구분됨

* '단독세대'란, 단독세대주이거나, 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분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단독세대 신청자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신청가능함

* '단독세대가 아닌 분'이란, 직계존속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함

■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 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분을 포함

**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1516호(2024.03.25.)]에 따릅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지역 → ③추첨

■ **①소득구분**

단계	소득구분	내용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1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2단계	신생아 일반공급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3단계	우선공급 (3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4단계	일반공급 (1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5단계	추첨공급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1인 가구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이하이거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	-------	--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나, 2단계 신청자 중 낙첨자는 3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4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 ②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춘천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춘천시 6개월 미만 거주자 및 강원특별자치도 거주자)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녀기준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5.07.25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2024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소득구분	비율	소득금액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생아우선공급, 우선공급	130% 이하	~9,366,906원	~11,151,514원	~11,740,362원	~12,653,012원	~13,565,661원	~14,478,311원	
신생아일반공급, 일반공급	130% 초과 160% 이하	9,366,907원~ 11,528,499원	11,151,515원~ 13,724,941원	11,740,363원~ 14,449,677원	12,653,013원~ 15,572,938원	13,565,662원~ 16,696,198원	14,478,312원~ 17,819,459원	
추첨공급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3.31억원) 충족	11,528,500원~	13,724,942원~	14,449,678원~	15,572,939원~	16,696,199원~	17,819,460원~
	1인 가구	160% 이하	~11,528,499원	~13,724,941원	~14,449,677원	~15,572,938원	~16,696,198원	~17,819,459원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3.31억원) 충족	11,528,500원~	13,724,942원~	14,449,678원~	15,572,939원~	16,696,199원~	17,819,460원~

-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702,038) ×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의원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구분	금액	내용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건축물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margin-top: 5px;"> <thead> <tr> <th colspan="2">건축물 종류</th> <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주택</td> <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 <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 </tr> <tr> <td>단독주택</td> <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 </tr> <tr> <td colspan="2">주택 외</td> <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 </tr> </tbody> </table>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토지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중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V

일반공급 신청자격

일반공급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춘천시에 거주하거나 강원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 **순위별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분

일반공급 청약통장 자격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1순위
 -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2순위 : 예치금액과 관계없이 청약예금·청약부금·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분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구 분	춘천시 및 강원특별자치도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전용면적 85㎡ 이하	200만원	300만원	25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300만원	600만원	4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400만원	1,000만원	700만원
모든면적	500만원	1,500만원	1,000만원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 순서

- 1순위 가점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 1순위 추첨제 : ①지역 → ②추첨
- 2순위 : ①지역 → ②추첨

■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춘천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춘천시 6개월 미만 거주자 및 강원특별자치도 거주자)

■ ②가점

- 전용면적별 1순위 가점제/추첨제 적용비율

구분	가점제	추첨제
전용면적 60㎡ 이하	40%	60%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40%	60%

- 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①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②부양가족수 (청약신청자 본인 제외)	35		0명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입주자저축	17	본인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가입기간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배우자	배우자 없음 또는 배우자 통장미가입	0	1년 이상 ~ 2년 미만	2
	1년 미만	1	2년 이상	3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에 따라 가점제 청약 시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에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통장가입기간 점수표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50% 적용)	점수
1년 미만	6개월 미만	1점
1년 이상 ~ 2년 미만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점
2년 이상	1년 이상	3점

-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는 전체 가입기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의 점수로 계산하며, 그 점수가 3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3점까지만 인정

- 본인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와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합산 시 17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17점까지만 인정

- 청약 전 반드시 배우자 본인이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를 발급하여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확인해야 하며, 향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시 배우자의 순위확인서 및 배우자의 당첨사실 확인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 적격함을 증빙해야 함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 당첨사실 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배우자의 청약통장이 가입되어 있으나, 순위확인서 발급 전 배우자의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순위확인서 발급이 불가하므로 적격증빙을 위하여 당첨자 발표 이후 계약 전까지 배우자의 청약통장 유지 필요

- 가점제 적용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1)

구 분	내 용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9호 각 목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소형·저가주택)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함.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 4) 확인방법: (1)주민등록표등본(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2)가족관계증명서, (3)혼인관계증명서(만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4)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②부양가족의 인정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을 의미함

<p style="text-align: center;">적용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부양'의 의미는 같은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을 의미함 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3)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녀 포함)는 미혼으로 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신청자의 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 재혼배우자의 자녀는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4)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외국인인 직계비속과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5) 확인방법: (1)주민등록표등·초본, (2)가족관계증명서, (3)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p style="text-align: center;">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p>	<p>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p> <p>*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p>
<p style="text-align: center;">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p>	<p>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른</p>

- **②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함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
 -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일반공급 유의사항

■ 1순위 가점제 청약 시 유의사항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분 및 그 세대원은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며,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 시 부적격 처리됩니다.
- 1순위 가점제 당첨 시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어,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당첨자발표일로부터 2년간 다른 민영주택의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합니다.
-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 거주 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 나이는 “만 나이”를 기준,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등(초)본”을 기준으로 합니다.
- ※ 청약신청 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합니다.
-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됩니다.(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므로 향후 다른 주택 청약 시 제한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단 부적격당첨자가 소명기간 내에 해당 공급 자격 또는 선정 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 청약과열지역은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 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확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 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 청약예금 가입한 후 예치금액이 적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분은 신청일 현재 변경된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하여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 또는 주거지 변경 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 할 경우에는 지역간 예치금액 변경 없이 청약 가능함)
- ※ 점수 입력은 청약자 책임(당첨자 결정 후에 당첨자의 청약내용에 대한 정확성을 확인하게 됨)이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 ※ 청약 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하여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 청약 신청 시 은행에서는 청약자의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 없이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으로만 청약접수를 받으므로 청약자는 본인의 청약자격(거주 지역, 거주개시일,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주택소유여부 등)을 신청 전 확인하여 청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청약신청은 청약자 본인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므로 청약자격 착오 기재 등으로 부적격자로 판정되어 계약체결이 불가하거나,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 및 접수은행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 주택소유 및 당첨사실 판단대상 : 청약자 본인 및 세대원 전원

VI 청약신청 및 당첨자 발표

인터넷 청약 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 (해당 순위 청약신청일 09:00 ~ 17:30)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신청유형 및 주택명 선택 → 청약자격 등 입력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
- 청약신청 시간* : 09:00~17:30
- * 17:30까지 청약신청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청약취소 →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내역 선택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취소 완료
- 청약신청 취소 가능시간 : 청약신청일 당일 09:00~17:30
- *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신청 취소 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현장접수, 정보취약계층에 한함)

- 현장접수 시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접수를 받으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해야 합니다.
- **특별공급** : 특별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10:00~14:00 사업주체 견본주택 방문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일반공급** : 일반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09:00~16:00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 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 현장접수 시 필요서류**

		필요서류	
본인 신청 시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서류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서류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해야 함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배우자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종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	---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해야 함

※ 주택공급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신청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해야 함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이데이터 (‘청약도움e’)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신청 단계에서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행정정보를 수신하여 세대주 여부 및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 청약신청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서비스 이용은 선택사항이며,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및 연계 기관(정보 보유기관)의 상황 등에 따라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용방법 : 청약신청 → APT → 청약홈 마이데이터(‘청약도움e’) 서비스 팝업 →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공고단지 청약연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를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 세대원 등록방법 : 청약자격확인 → 세대구성원 등록/조회 및 세대구성원 동의 - 이용방법 : 공고단지 청약연습 → 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당첨자발표 서비스	청약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회방법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 - 조회기간 : 2025.08.12.(화) ~ 2025.08.21(목) (10일간) - 조회기간(10일)이 경과하더라도 ①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또는 ②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 현장접수자의 경우 인증서 로그인 없이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만으로 당첨내역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PC·모바일 신청자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 - 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당첨자발표 서비스	문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공일시 : 2025.08.12.(화)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제공대상 :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자 * 당첨자 발표 안내 문자에는 스미싱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링크(URL)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의 링크(URL) 또는 전화번호는 절대 누르지 않는 등 유사한 스미싱 문자에 대해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통신 환경 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반드시 청약홈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Ⅶ

청약신청 및 당첨자 발표

■ 당첨자격확인 서류제출 일정 안내

구분	제출기간	장 소
당첨자 (특별공급, 일반공급)	2025.08.18.(월) ~ 2025.08.20.(수) 10:00 ~ 17:00 (3일간)	춘천 동문 디 이스트 어반포레 건본주택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온의동 308-6번지)
예비입주자 (특별공급, 일반공급)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및 제52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사업주체가 정한 기간에 신청자격별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서류 제출은 건본주택 방문접수를 원칙으로 합니다. (대리인 신청시 아래 구비서류 내용 중 대리인 서류 추가필요 합니다.)
- ※ 당첨자(특별공급, 일반공급) 및 예비입주자는 지정된 당첨자 서류제출 기간 내에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신청내역 등 적격 자격에 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부적격 통보를 받거나 부적격 의심 사유가 있어 소명이 필요한 경우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소명기간 내(계약 체결 이전)제출하여야 합니다.
- ※ 소명자료 제출과 관련 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통보예정으로 청약신청자가 청약 신청 시 잘못된 정보 기재(연락처, 주소 등)로 해당 정보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부적격 통보를 받거나 부적격 의심 사유가 있어 소명이 필요한 경우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소명에 필요한 서류를 소명기간 내(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 계약 이후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에도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은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계약이 취소됩니다.
- ※ 위변조된 서류 등을 제출할 경우 「주택법」 제65조(공급질서 교란) 위반으로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입주 자격이 제한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습니다.
-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일괄 폐기처분할 예정입니다.

■ 당첨자(예비입주자) 구비서류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는 계약체결 전 서류 제출기간에 반드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특별공급 건본주택 현장접수는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에만 해당하며, 해당 특별공급 서류를 완비하여 신청자격 여부 확인 후 적격한 경우에만 접수 가능합니다.
- ※ 모든 제출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 등으로 전송받은 경우 인정하지 않습니다.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 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서류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재외동포: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 모바일신분증 불가(실물 지참 필요) ※ 2020.12.21. 이후 신규발급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여권과 함께 제출
	○		인감증명서	본인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가능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시 위임인(대리) 계약 불가 • 본인 발급용에 한함(용도: 아파트 계약용)
	○		인감도장	본인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계약 시 서명으로 대체
	○		주민등록표등본 (전체포함)	본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전체포함)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과거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본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배우자 및 자녀, 직계존속 등 공급신청자와의 관계)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본인	• 조회 기간 : 본인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관추천 특별공급 제외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본인	•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만 30세 이전 혼인하여 무주택 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일반공급 가점제,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해당) - 만 19세 이전 혼인하여 무주택 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다자녀가구 특별공급 해당)
		○	주민등록표등본 (전체포함)	배우자	• 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상기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발급사항 참고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혼 배우자의 전혼자녀를 자녀수 및 부양가족에 포함 시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하는 경우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공개 “상세”로 발급
	○	해외체류 관련 입증서류 (단신부임)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8항에 의거 공급신청자가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생업 종사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공증 첨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기업·기관소속에 소속되어 해외에 파견된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 재직증명서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근로 관련 서류, 취업·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근로자가 아닌 경우(반드시 제출) : 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 관련 증빙서류 불가능한 자 또한 생업사정 불인정
	○	복무확인서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그가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에 주택을 공급 받으려는 경우, 군복무기간(10년 이상) 명시
기관추천 특별공급	○	해당기관의 추천서 또는 인증서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 기관 추천서(기관추천 명단 확인으로 같음)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주민등록표초본 (전체포함)	피부양 직계존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존속포함)이 모집공고일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표등본 상 등재되어 3세대 이상 구성 점수를 받은 경우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3년 이상의 과거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및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직계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18세 이상의 자녀를 미혼 자녀로 인정 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만19세 미만 미성년 자녀의 미혼 확인)
	○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급 신청자가「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한 경우
	○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신한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제출 - 임신진단서 이외 서류 인정 불가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의료기관명과 임신 주 차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양의 경우(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신혼부부 특별공급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이력 포함하여 발급 - 조회기간 : 건강보험가입 최초일부터 ~ 입주모집공고일 현재까지 전체기간 설정하여 발급 ※ 단, 직계존속은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경우에만 해당
	○	소득증빙서류 (재직증명서 포함)	본인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된 세대원의 소득 입증 서류) ※ 단, 직계존속은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경우에만 해당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전체포함)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1년 이상의 주소 변동 사항, 세대주 성명,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제출 임신진단서 이외 서류 인정 불가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의료기관명과 임신 주 차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양의 경우(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	사실증명 (신고사실 없음)	본인 및 만 19세이상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비사업자 확인각서 제출 시 “소득사실 없음” 확인 가능해야 함
	○	부동산소유현황	본인 및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래 <표3> 참조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노부모	○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부양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사실을 인정받으려는 경우

부양자 특별공급		(전체포함)	직계존속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3년 이상의 과거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 발급)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피부양 직계존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부양 직계존속의 부양기간 내 해외거주기간 확인 필수 ※ 조회 기간 : 본인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출입국기록을 증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록대조 시작일 : 생년월일 / 기록대조 종료일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또는 손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인의 주민등록표상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주민등록표 상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공개 "상세"로 발급
		주민등록표초본 (전체포함)	피부양 직계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30세 이상 미혼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1년 이상) 및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피부양 직계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기록대조일을 해당 부양가족의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 만30세 미만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30세 이상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직계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18세 이상 자녀를 미혼 자녀로 인정 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피부양 직계존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3년간의 내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피부양 직계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 당첨자의 30세 이상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간의 내역) 	
생애최초 특별공급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이력 포함하여 발급 조회기간 : 건강보험가입 최초일부터 ~ 입주모집공고일 현재까지 전체기간 설정하여 발급 ※ 단, 직계존속은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경우에만 해당
	○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약자 본인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의 5개년도 서류 〈표2〉 참조
	○	소득증빙서류 (재직증명서 포함)	본인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표1〉 참조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된 세대원의 소득 입증 서류) ※ 단, 직계존속은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경우에만 해당
		주민등록표초본 (전체포함)	직계존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1년 이상의 주소 변동 사항, 세대주 성명,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혼 자녀가 없는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직계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닌 분(배우자가 없는 분)이 동일 등본상 만18세 이상 자녀를 미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제출 임신진단서 이외 서류 인정 불가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의료기관명과 임신 주 차 확인이 가능해야 함)
		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양의 경우(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사실증명 (신고사실 없음)	본인 및 만 19세이상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비사업자 확인각서 제출 시 "소득사실 없음" 확인 가능해야 함 	

		○	부동산소유현황	본인 및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래 <표3> 참조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특별공급 당첨자		○	기존주택 처분 관련 서약서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서약서(별지 제6호서식)
일반공급 당첨자 (가점제)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피부양 직계 존·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계 존·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기록대조일을 해당 부양가족의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 만30세 미만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30세 이상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주민등록표초본 (전체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부양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사실을 인정받으려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3년 이상의 과거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및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만30세 이상 미혼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1년 이상) 및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또는 손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전부 공개하여 "상세"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직계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18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 * (청약홀) 청약홀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발급
		○	당첨사실 확인서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 * (청약홀) 청약홀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피부양 직계존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 당첨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3년간의 내역)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피부양 직계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 당첨자의 30세 이상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간의 내역)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청약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용도 : 자격검증 서류제출 위임용(대리 신청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불가), '본인 발급용'에 한함 ※ 단 ,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위임장	청약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위임장 주택전시관에 비치 	
○		대리인신분증, 인장	대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재외동포: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 모바일신분증 불가(실물 지참 필요) ※ 2020.12.21. 이후 신규발급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여권과 함께 제출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해당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무허가건축확인서 또는 민원회신,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서 등 "소형·저가주택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기타 소명서류	해당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인정 서류 	

※ 상기 모든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해당 서류상의 모든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공개하여 발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직인 날인이 필요한 서류 중 직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 및 사본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상기 서류 외 당첨자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에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표1>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입증 서류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자료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① 재직증명서(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휴직기간을 명시하여 발급)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각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매월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① 해당직장 ② 해당직장/세무서
	금년도 신규취업자 또는 금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직인 날인) ②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직인날인) 또는 각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원본 ③ 직장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④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①,②,③ 해당직장 ④ 국민연금공단
	전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근무처별 소득명세표상 “주(현) 총급여 금액을 재직증명서상 근무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①,② 해당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신규취업자 : ① 간이지급명세서 또는 근로계약서(근무기간 및 급여액 기재, 직인날인 필수) 계속근로자 : ② 재직증명서 또는 위촉증명서 ③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 (종합소득세 미신고자는 ④ 거주자의 사업(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①,② 해당직장 ③,④ 세무서
영업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①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 ② 사업자 등록증 사본	①,② 세무서
	법인대표자	①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②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③ 전년도 재무제표	① 등기소 ②,③ 세무서
	신규사업자	① [국민연금 가입자]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국민연금 미가입자] 공고일 이전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본)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① 국민연금공단 ② 세무서 또는 등기소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①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②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또는 간이지급명세서 ③ 재직증명서 또는 위촉증명서(직인 날인)	①,② 해당직장/세무서 ③ 해당직장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① 주민센터	
일용근로소득자	①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또는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① 세무서 또는 해당직장	
무직자	① 비사업자 확인 각서(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무직인 경우) ②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① 건분주택 ② 세무서	

※ 상기 소득 입증관련 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서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재직증명서상 휴직기간 및 휴직유형(예시: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명시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소득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 해당직장, 세무서 등 해당기관의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소득증빙관련 모든 서류는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시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표2>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 납부입증 제출서류

서류구분	확인자격	증빙서류제출	발급처
자격입증서류	근로자	① 재직증명서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① 해당직장, 세무서 ② 건강보험공단
	자영업자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①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납부내역증명 포함) 과거 1년 이내 및 해당년도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세납부입증서류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근로자, 자영업자 또는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 (5개년도 각각의 증빙서류 필요) ① 소득금액증명(근로자용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및 납부내역증명서 (종합소득세 납부자) 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③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직인날인) 또는 일용근로자용 소득금액증명	① 세무서 ② 해당직장 ③ 해당직장/세무서

■ <표3>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보유기준 및 자산입증 제출서류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 및 세대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들 포함) 전원의 자산 입증서류

해당자격	자산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부동산소유현황”이 있는 경우	필수	① 부동산소유현황 (세대원별 각각 발급) -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② 건물(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소유현황에 표시된 해당 부동산 모두에 대한 서류 발급)	①, ②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① 공동(개별)주택가격 확인서 (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인 경우) ② 개별공시지가확인서 (소유 부동산이 토지이거나 단독·공동주택을 제외한 일반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인 경우) - 개별공시지가 없는 경우 표준지공시지가 사용 ③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 (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 외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인 경우) ('위택스' > 지방세정보 > 시가표준액 조회' 에서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①, ② 행정복지센터 ③ 위택스(www.wetax.go.kr)
	해당자	농지법 및 초지법 등에 따라 토지 가액에서 제외되는 경우 ① 농지대장 ② 축산업 허가증 ③ 토지이용계획확인원	① 행정복지센터 ② 지자체 축산과 ③ 토지이음(www.eum.go.kr)
“부동산소유현황”이 없는 경우	필수	①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전체 화면 캡처) - 공동인증서 지참 후 건물주택에서 해당화면 구현 필요 ②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단위) : 재산세 발생한 사실이 없음을 증빙, 전국단위 재산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해당 시청, 구청,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①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② 행정복지센터

※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에서 추첨제로 청약하고 자산기준 충족을 입증해야 하는 주택공급신청자는 상기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합니다.

※ 자산보유기준(3.31억원) 산정 시 세대원 중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보유한 주택 또한 자산가액 판정 대상이 됩니다.

VIII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

■ 계약체결 일정 및 장소

계약기간	장 소	문의전화	비고
2025.08.25.(월) ~ 2025.08.27.(수) (3일간, 10:00~16:00)	춘천 동문 디 이스트 어반포레 견본주택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온의동 308-6)	1588-0654	일정 및 시간 변동 시 별도 공지 예정

- ※ 계약금 납부 : 분양대금 납부계좌 입금 후 무통장입금증을 견본주택에서 제출[견본주택에서 계약금(현금) 수납 불가]
-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 청약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 포함)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관계법령에 따라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됩니다.
- ※ 예비입주자(특별공급, 일반공급) 동·호수 추첨 및 계약일정은 추후 별도 개별안내 예정입니다.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계좌구분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아파트 대금 수납계좌	우리은행	1005-204-738278	우리자산신탁주식회사

- ※ 지정된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에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 계약금 무통장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 101동 501호 당첨자의 경우, 입금자명을 '1010501홍길동'으로 기재)
- ※ 무통장 입금증은 계약체결 시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통장 입금증은 분양대금 납부영수증으로 같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상기 관리계좌로 납부되지 아니한 어떠한 다른 형태의 입금 및 납부도 이를 정당한 납부로 인정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 수납계좌가 변경될 경우 사업주체는 공급계약서 상의 수분양자 주소로 해당 내용을 우편통지할 예정이며, 우편통지 도달과 관련한 사항은 다를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시 구비사항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		○	추가 개별통지 서류	-	사업주체가 당첨자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기타서류
	○		신분증	본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재외동포: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 모바일신분증 불가(실물 지참 필요) ※ 2020.12.21. 이후 신규발급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여권과 함께 제출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용도 : 아파트 계약용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본인 발급용에 한함, 대리인 발급 절대 불가함)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자는 본인서명으로 대체(대리인 위임 불가)
	○		계약금 입금 영수증	-	무통장 입금증

	○		전자수입인지	-	수입인지사이트(https://www.e-revenuestamp.or.kr/),우체국에서 전자수입인지 구입하여 계약시에 첨부 - 분양계약자 부담분(7만5천원)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발급
대리인 계약시 추가사항 (*본인 외 모두)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청약자)	용도 : 아파트 계약 위임용 / 인감증명서(본인 발급분에 한해 가능하며, 대리발급분은 절대 불가함)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 불가
	○		위임장	본인(청약자)	당사 견본주택 비치 / 인감도장 날인
	○		신분증 및 인장	대리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재외동포: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 모바일신분증 불가(실물 지참 필요) ※ 2020.12.21. 이후 신규발급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여권과 함께 제출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계약 체결 시 대리인 방문이 불가하며 본인이 방문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조건 및 유의사항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 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청약제한사항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 계약체결 후 해약 또는 관련법 위반 등으로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 계약 시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합니다.
- 아래 사항에 해당될 경우 당첨 및 체결된 계약의 취소 및 해약의 사유가 됩니다.
 - ①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될 시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합니다.
 - ②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됩니다.
- 행정구역 및 단지 내 시설 명칭, 동·호수는 관계기관의 심의 결과에 따라 공급 시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한 사항입니다.
-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하며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합니다.
- 주변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과 아파트 배치, 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주변도로의 비산분진, 소음문제 등을 포함)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문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 등은 현장조건에 맞게 설계 변경된 최종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도면에 준하며, 이로 인해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체결 후 계약자의 변심, 귀책사유 등으로 인하여 분양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계약 내용에 따라 위약금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준합니다.

■ 인지세 납부 관련 안내

- 아파트 공급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에 해당되며, 인지세 납부대상으로 「인지세법」 제1조 제2항에 의거 사업주체와 분양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정부수입인지 형태로 균등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분실했을 경우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 본인에게 있음.

기재금액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세액(균등 납부)	2만원	4만원	7만원	15만원	35만원
사업주체 부담액	1만원	2만원	3만5천원	7만5천원	17만5천원
분양계약자 부담액	1만원	2만원	3만5천원	7만5천원	17만5천원

※ 최초계약시 전자수입인지는 사업주체에서 선 납부 후, 전자수입인지 납부 확인증을 계약자에게 교부, 계약자가 1/2금액을 사업주체 계좌로 납부 합니다.

- ※ 부동산 등기(최초 분양계약자와 최종 매수자의 인지세 납부의무이행 확인)와는 무관하게 중간 전매계약도 인지세법에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부동산 거래계약서의 실제거래가격(분양대금+프리미엄)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해당되는 세액을 납부하여야 함.
- ※ 정부수입인지는 취급금융기관(우체국, 은행) 또는 전자수입인지 사이트(www.e-revenuestamp.or.kr)에서 발급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금융결제원(☎1577-5500)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정부수입인지는 분양권 매매 당사자뿐만 아니라 물건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나 등기 대행하는 법무사도 구매하여 첨부할 수 있습니다.
- ※ 정부수입인지는 1회에 한하여 출력되므로 직접출력 시 반드시 프린터 상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발행 불가)
- ※ 인지세 납부 등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자료실(인지세 자주 묻는 상담사례)에서 확인하시거나 세무서(소비담당)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계약체결 이후 부적격 당첨, 공급질서 교란행위, 통장매매,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불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양지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 중도금 대출안내

- 대출 관련 세부내용은 견본주택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관련정책, 대출상품의 종류 및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 할 수도 있으므로 지정한 금융기관에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시행위탁자가 알선하는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신청 여부는 계약자의 선택사항이며 시행위탁자가 알선한 금융기관 및 대출취급상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의 중도금대출 알선조건은 '이자후불제' 조건이며, 총 분양대금에 60%범위 내에서 시행위탁자가 지정한 대출금융기관 및 조건에 따라, 중도금대출을 알선할 예정입니다.
- 적격대출 시 대출 이자는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 시행위탁자가 대납하되 계약자는 입주 시 시행위탁자가 지정한 기일 내에 중도금대출 상환 및 중도금대출 대납이자 등을 일시 납부하여야 하며(납부하지 않을 경우 입주가 거부될 수 있으며, 납부지연으로 연체이자 등을 부담하여야 함),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발생하는 대출이자에 대해서는 계약자 본인이 해당 대출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당 사업지는 비규제지역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한국주택금융공사 중도금 대출보증은 세대당 2건(기존 보증 이용건수 합산)으로 제한되었으며, 금융기관의 대출조건에 따라 일부 중도금 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본 주택의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은 정부 금융정책 및 금융기관 사정에 따라 선정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중도금 납입예정일은 조정될 수 있으니 이에 따른 내용을 인지하고 계약을 진행하며 중도금 납입일 조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가 중도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자는 분양계약 체결 후 시행위탁자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 협약 금융기관과 중도금 대출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 관련 법률의 변경 및 정부 및 금융기관의 정책(주택담보대출 제한, 보증서 발급제한, 중도금 대출의 제한 등), 대출기관의 규제, 시행위탁자의 사정 등으로 인해 대출조건 제한 및 대출 알선이 불가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계약자는 상기 분양대금(중도금 및 미납대금, 연체료 포함)을 납부일정에 따라 계약자의 부담으로 시행수탁자에게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의 알선은 시행위탁자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정부정책, 금융기관, 시행위탁자의 사정 등으로 대출 알선 불가 및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제1·2금융권 및 기타 대출방식 포함), 대출금리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시행위탁자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대출 대출취급기관(알선 시)의 특유성(업종, 업태 등) 및 대출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시행위탁자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할 경우에도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사유(보증제한, 신용불량 등)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대출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위탁자의 대출 알선이 불가하거나 개인별 대출축소·대출불가 등의 사유로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없으며, 계약자의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시행위탁자 등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대출에 필요한 중도금 대출관련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금융신용불량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을 현금으로 직접 납부(이 경우 시행위탁자 등은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별도로 통보할 의무가 없으며 미납 시 연체료 가산됨)하여야 하며, 계약자는 대출불가 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대출 보증요건 강화에 따라 대출 보증건수 및 보증한도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정부 및 금융기관의 정책에 의해 입주시점의 담보대출에 대한 대출심사 강화, 원리금 상환조건 등 규제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시행위탁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시행위탁자는 대출기관과 협약 후 계약자에게 제시한 조건으로 대출을 신청한 계약자에게만 대출을 알선하며, 계약자가 시행위탁자의 대출알선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변경을 요구할 경우 대출을 알선하지 않으며, 계약자는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 신청은 계약진행에 따라 모집공고에 기재된 중도금 납부 약정일자보다 다소 지연될 수 있으므로 이를 이유로 시행위탁자 등에 분양계약해지 요구, 중도금 대출 신청 거부 등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 신청 및 기표 일정이 공급대금의 각 납부회차 이후일지라도 이전 회차의 공급대금까지 함께 기표하여야 합니다.
- 대출은행과의 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금융기관에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정보제공 미동의에 따른 대출불가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시행위탁자 등은 이에 책임지지 않음.)
- 대출알선과 관련하여 시행위탁자 및 금융기관에서 요청한 서류를 미제출 시 시행위탁자는 대출을 알선하지 않습니다.
- 시행위탁자가 알선한 대출의 대출기간 만료 시(준공 후 미입주 등) 금융기관의 대출기간 연장 및 공정률에 따른 중도금 납입일자의 변경에 대해 별도의 절차없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대출신청 관련 안내는 당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사유로 인해 대출 미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 등이 발생할 경우 대출 금융기관의 대출중단 등 요구에 따라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건본주택은 대출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당사 및 관계자는 대출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중도금 대출 취급기관의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에 고객의 대출비용 축소 또는 대출 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당(전화상당 포함) 내용을 근거로 시행위탁자에게 대출비용 축소 및 대출불가의 책임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및 잔금의 지연이자는 공급계약을 기준으로 합니다.
- 시행위탁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시행위탁자가 대납하던 중도금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의 특성(업종, 업태) 및 대출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시행위탁자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의 입주지정일이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경우에도 중도금 대출 이자는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 시행위탁자가 대신 납부하며,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계약자가 직접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시행위탁자는 알선하지 않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받은 경우 그에 대한 이자는 계약자가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입주증 발급일 또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중 빠른날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하며,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금액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담보대출에 따른 보증수수료, 인시대 등 제반수수료 및 근저당설정 비용 등은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담보 전환 시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기타대출조건 등은 대출금융기관의 조건에 따르기로 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 및 공급계약서의 약관에 따릅니다.

IX 추가 선택품목 계약

추가 선택 품목 공통 유의 사항

- [플러스옵션], [가전옵션 선택품목]은 아파트 공급대금(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품목으로서 구입 의사가 있는 분양계약자는 공급계약 체결 이후 선택 계약하는 사항입니다.
- 아파트 공급계약과 별도로 판매·진행되며, 계약 일정, 계약 내용, 납부 방법, 납부 계좌, 계약 주체, 제품 관련 사항 등은 추후 계약자를 대상으로 별도 통보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건본주택에서 확인 바랍니다.
- 추가 선택 품목은 시공상의 일정 관계로 일정 시점 이후에는 추가 선택 품목의 계약이 불가합니다(추가 선택 품목 계약 일정은 옵션별 상이하며, 자세한 일정은 추후 통보 예정임)
- 추가 선택 품목 계약은 공급계약에 부수되는 마감공사 관련으로 소요 자재를 미리 확보하여야 하고, 특히 계약 이후에는 계약해제, 변경시 원상회복, 변경공사 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하는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계약 이후 변경은 사업 주체가 별도로 지정한 기간 내에만 변경 가능하며 이후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변경 할 수 없습니다.
- 추가 선택 품목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시청으로부터 취득세 부과 대상이며 이는 공급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발코니 확장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 발코니 확장

1) 발코니 확장 공사비

타입	고객 부담 발코니 확장 공사비	비고
59	무상	-
84A		
84B		
84C		
84D		

※ 발코니 확장 금액은 분양대금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무상으로 제공되며, 별도의 계약체결은 없으니 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향후 발코니 무상제공에 따른 제세공과금은 계약자 부담입니다.

■ 발코니 확장 관련 유의사항

- 발코니 확장 공급 대금은 일괄 확장(일부 발코니, 주방 발코니, 실외기실, 대피공간 등은 제외)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또한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 비용과 설치 품목 증가 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단위세대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선호도,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고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전시하였습니다. 발코니 확장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공간이 협소하고 단위 세대의 공간 활용도가 저하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어 계약자는 계약 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확인하여야 합니다.(일부 유무상 옵션타입 반영)
- 비확장 세대는 확장형 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여 공간 활용도가 저하되거나 일부 실의 사용이 제한될 수 있고 견본주택과 상이한 내부 공간구성 및 인테리어(기본제공품목 제한 적용)가 적용되며, 외부 창호 미설치에 따른 개별 설치 여부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입주 후 공동주택 관리 규약 및 인접세대 관련 사항 등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간 구성상 플러스옵션이나 가전옵션 선택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 이를 충분히 감안하시어 청약 및 계약 체결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부위 표기의 '거실', '침실(안방)' 등의 표현은 카탈로그 기준이며, '계약자 선택사항 및 유의사항'을 계약자가 직접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과 가변형 벽체 칸막이의 개별 시공(관계 법령에 의거 입주자 등의 동의 필요), 제거 등을 할 경우 계약자는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상기 확장 비용은 외부 발코니 새시 비용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 발코니 확장 시 확장 부분의 외부 새시는 이중 창호로 설치되며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그 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 문의 방향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발코니 확장면 평면에서 비 확장으로 남아있는 발코니 새시는 단창으로 설치되며, 결로 및 곰팡이 등의 하자발생 시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실내 습도 등 생활 습관에 따라 발코니 새시 및 유리, 기타 확장 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 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 환기 등으로 예방하셔야 하며(주기적인 실내 환기는 결로 발생 예방에 큰 도움이 됨) 이로 인한 하자 발생 시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창호(프레임, 유리 등) 및 도어는 견본주택 설치를 위해 생산된 제품으로 본 공사 시 동급제품으로 입찰을 통해 시공됨에 따라 견본주택에 설치된 브랜드, 유리스펙, 표현문구 및 프레임, 손잡이 등의 하드웨어는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욕조, 현관디딤석, 욕실 뒷선반, 화장대 상판 등의 인조석은 견본주택 설치를 위해 생산된 제품으로 본 공사 시 동급 제품으로 입찰을 통해 시공됨에 따라 견본주택에 설치된 제품과 브랜드, 디자인, 패턴 등이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기본형 세대(비 확장형 세대) 선택 시 냉매 배관,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TYPE, 배치 및 설치 수량은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세대 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에어컨 매립 배관 위치,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인접 세대가 발코니를 비확장시에는 이와 접한 발코니 확장 세대의 확장 발코니 벽면에 단열재 및 마감재가 시공되나 결로 발생(입주자께서는 환기 등으로 예방하셔야 하며 이로 인한 하자보수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및 일부 벽체의 돌출, 인접 세대의 소음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서비스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면적 증감 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발코니 확장에 따른 이중 창호, 단열재 및 마감재의 추가 설치로 발코니 실사용 면적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당사에서 시행하는 발코니 확장은 건축법에 의거 적법하게 설계되었으며, 사용승인 후 개별적으로 확장 시에는 「건축법 시행령」 및 「공동주택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발코니 대피공간의 구조 변경 및 설치 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관리주체에 반드시 신고 확인 후 설치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홍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가 있으며,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지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세대의 상부 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상부 세대의 배관 일부가 확장 세대 상부에 노출되어 이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비확장 세대의 경우 등기구의 개수 및 램프의 개수가 확장형에 비해 줄어들거나 크기가 축소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으로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본 아파트의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 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바랍니다. 또한, 개별적으로 발코니 확장공사를 하여 발생하는 마감재 오염 및 훼손, 결로, 단열 등의 문제는 당사와 무관한 사항이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플러스옵션 ※ 발코니 확장시에만 선택 가능

※ 플러스옵션 설치 위치 및 품목은 지정되어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및 품목을 지정 선택할 수 없습니다.

※ 플러스옵션 선택에 따라 마감재, 벽체 및 가구 계획, 일부 공간의 조명 등이 달라지므로, 실제 적용된 마감재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품목	내용	주택형					비고
		59	84A	84B	84C	84D	
현관중문	3연동 슬라이딩도어	1,298,000	1,331,000	1,331,000	1,331,000	1,254,000	

주방미감재	선택 1. 주방세라미타일(상판+벽체+아일랜드)		3,179,000	4,268,000	4,642,000	3,762,000	4,246,000	中 택 1
	선택 2. 주방엔지니어드스톤(상판+벽체+아일랜드)		2,310,000	3,058,000	3,333,000	2,684,000	3,047,000	
주방특화	상부플랩장+수입하드웨어+상부장조명+독립형후드 +사각싱크볼+벽부형악세서리	선택 1. (세라미타일 옵션 선택시)	2,431,000	4,378,000	4,807,000	4,015,000	4,367,000	中 택 1 (주방미감재 선택시 선택가능)
		선택 2. (엔지니어드스톤 옵션 선택시)	2,398,000	4,290,000	4,719,000	3,938,000	4,290,000	
	상부플랩장+수입하드웨어+상부장조명+독립형후드 +사각싱크볼+벽부형악세서리+아일랜드스탁연장	선택 3. (세라미타일 옵션 선택시)	-	-	-	6,963,000	-	
		선택 4. (엔지니어드스톤 옵션 선택시)	-	-	-	6,644,000	-	
와이드주방	맘데스크+슬라이딩도어+고급형팬트리+식탁 우물천장설치 및 직간접조명		-	8,657,000	-	-	7,865,000	수납특화 옵션과 중복선택불가
침실1 고급형 드레스룸	벽 패널 조명형 시스템가구+패턴유리 가구도어		2,046,000	2,937,000	2,244,000	2,475,000	2,871,000	
침실2 불박이장	침실2 불박이장		1,419,000	1,518,000	1,518,000	1,518,000	1,518,000	
일파룸 수납특화	선택 1. 일파룸수납특화(시스템선반추가)		-	1,056,000	-	726,000	1,034,000	中 택 1
	선택2. 침실2드레스룸(시스템선반+가구도어)+주방팬트리(시스템선반)		-	-	-	1,991,000	-	
광목 강마루	광목강마루 (거실, 주방, 침실, 팬트리 바닥)		770,000	1,045,000	990,000	1,012,000	1,067,000	
세라미타일 +시트판넬	선택 1. 세라미타일(거실아일랜드1면, 복도)+시트판넬(기타벽체마감, 거실, 복도, 주방)		3,850,000	3,971,000	4,444,000	5,236,000	4,422,000	中 택 1
	선택 2. 와이드주방 옵션 선택 시 세라미타일(거실아일랜드1면, 복도)+시트판넬(기타벽체마감, 거실, 복도, 주방)		-	3,696,000	-	-	4,092,000	
조명특화	아일랜드/쇼파등벽/복도포인트등 조명+거실 우물천장 직간접조명 +주방슬림라인등+신발장하부간접등		1,595,000	1,639,000	1,628,000	1,815,000	1,672,000	
공용욕실 특화	벽타일(600X600)+비데일체형 양변기+고급세면대 +무광수전 및 악세서리+복합환풍기		1,881,000	1,892,000	1,892,000	1,892,000	1,892,000	
부부욕실 특화	벽타일(600X600)+비데일체형 양변기+고급세면대+무광수전 및 악세서리 +스마트샤워수전+샤워부스프레임무광흑니켈+복합환풍기		2,112,000	2,123,000	2,123,000	2,123,000	2,123,000	

가전옵션 ※ 발코니 확장시에만 선택 가능

품목	내용		주택형					비고
			59	84A	84B	84C	84D	
가전	시스템에어컨	거실+침실1	3,509,000	3,773,000	3,773,000	3,773,000	3,773,000	중 택 1
		거실+침실1+침실2+침실3	5,368,000	5,632,000	5,632,000	5,632,000	5,632,000	
	시스템에어컨+제습기	거실+침실1+드레스룸 제습기	6,358,000	6,952,000	6,952,000	6,952,000	6,952,000	
		거실+침실1+침실2+침실3+드레스룸 제습기	8,206,000	8,800,000	8,800,000	8,800,000	8,800,000	
	비스포크냉장고	비스포크냉장고(냉장,냉동,김치)	6,061,000	-	-	-	-	
		비스포크냉장고(냉장,냉동,김치)+수납장	-	6,985,000	6,996,000	6,941,000	6,985,000	
	전기룩탑	인덕션 3구	605,000	605,000	605,000	605,000	605,000	
	식기세척기	빌트인식기세척기(12인용)	957,000	957,000	957,000	957,000	957,000	
	공기청정시스템	전실	1,595,000	1,595,000	1,595,000	1,595,000	1,595,000	
	스마트 주방TV	13인치	693,000	693,000	693,000	693,000	693,000	

플러스 옵션 유의사항

- ① 상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등급 이상으로 변경 될 수 있으며, 주택형별 설치 위치 등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 바람.
- ② 추가 선택 품목의 설치 위치는 지정되어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할 수 없음.(추가 선택품목의 위치 및 선택 항목은 분양홈페이지 또는 견본주택에서 확인 바랍니다)
- ③ 추가 선택 품목은 견본주택에 설치된 세대에 일부 품목이 전시되오니 청약 및 계약 시 확인하시기 바람.
- ④ 추가 선택 품목은 본 아파트의 컨셉에 맞추어 디자인하고 품질 관리하는 품목으로 판매가 및 사양에 대해 교제 및 해약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사 및 기타, 시중 품목과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하시기 바람.
- ⑤ 유상옵션 선택에 따라 가구에 면한 바닥마감재는 시공되지 않음.
- ⑥ 현관 중문은 기밀, 차음, 단열 등의 성능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공간 분리 및 시야 차단 목적에 한하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람.
- ⑦ 아트월타일 유상옵션 선택 시 타일이 설치되는 거실 및 복도구간은 조명특화(간접조명) 옵션 선택에 따라 단천정 설치시 타일의 시공 높이는 다소 달라질 수 있으며, 타일 자체 특성에 따라 실제 타일의 무늬는 일정하지 않을 수 있음.
- ⑧ 조명특화 유상옵션 미 선택 시 거실 및 복도 단천정은 설치되지 않음.
- ⑨ 타일 자체 특성에 따라 실제 타일의 무늬는 일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색상과 입자가 균질하지 않을 수 있고, 가공 공법에 따라 평활도가 일정하지 않을 수 있음.
- ⑩ 추가 선택 품목은 용도에 맞게 선택 바라며, 견본주택에 설치되어 있지 않은 형태에 대해서는 카탈로그 등을 참조하시기 바람.(본 공사 시 형태, 재질, 사양 등이 등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⑪ 주방특화 옵션은 주방 마감재(세라믹타일, 엔지니어드스톤)옵션 선택 시에만 선택 가능한 유상옵션임.
- ⑫ 주방상판, 벽체, 아일랜드 상판 유상옵션 세라믹타일, 엔지니어드스톤은 제품 특성상 패턴, 색상, 베인이 균질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음매가 발생되고 견본주택에 설치 된 자재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⑬ 아트월타일+시트판넬 유상옵선 선택 시 복도벽 타일 설치부분 및 거실쇼파 뒷벽 천장에 픽처레일이 함께 제공 됨.
- ⑭ 주방특화 유상옵선선택과 무관하게 주방상판/벽체/아일랜드 세라믹타일, 엔지니어드스톤 유상옵선은 선택 가능함.
- ⑮ 84A, 84D 타입의 와이드주방 유상옵선 선택 시 식탁우물천장 조성 및 직간접 조명이 설치되며, 조명특화 옵션과 무관하게 선택 가능한 품목임.
- ⑯ 와이드주방 유상옵선 선택 시 알파룸 공간에 맘스데스크 및 고급형 팬트리가 설치되며, 와이드주방 유상옵선 선택과 무관하게 주방마감재 및 주방특화 유상옵선은 선택 가능함.
- ⑰ 84C타입의 주방특화 유상옵선 선택 시 아일랜드 식탁연장이 적용된 옵션을 추가 선택가능하며, 아일랜드 식탁연장 옵션에 따라 아일랜드 식탁의 길이와 폭이 상이하오니 견본주택을 확인바람.
- ⑱ 침실1 고급형 드레스룸 유상옵선 선택시 판넬형 시스템가구에 면한 벽면의 벽지는 시공되지 않음.
- ⑲ 침실2 붙박이장 유상옵선 선택 시 붙박이장에 면한 바닥, 벽, 천장 마감재는 시공되지 않음.
- ⑳ 와이드주방옵선 및 수납특화 옵션선택에 따라 조명기구, 스위치, 콘센트 및 온도조절기 설치위치는 달라지거나 설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㉑ 강마루 시공 패턴 및 나누기도는 본 공사 시 현장 여건에 따라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으며, 마루의 특성상 색상, 무늬 패턴 차이와 옹이는 자연스러운 것으로 하자가 아닙니다.

기전유상옵선 유의사항

- ① 시스템에어컨에는 공기청정기능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 ② 시스템에어컨 옵션 계약은 제안된 사항 외에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시스템에어컨 옵션 금액은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음.
- ③ 상기 타입별 공사비 산정 시 주택형별 면적에 다른 실외기 용량 차이로 인해 금액 차이가 발생함.
- ④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 시 세대 내 냉매 매립 배관(거실+침실1) 및 관련 시설은 설치하지 않음
- ⑤ 시스템에어컨 옵션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거실은 스탠드, 침실1은 벽걸이형 기준으로 총 2개소의 냉매 배관만 시공됨.(천장형시스템에어컨을 위한 냉매 배관 및 드레인온 설치되지 않음)
- ⑥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에 따라 각 세대 내 실외기실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한 실외기실 공간이 협소해질 수 있음.
- ⑦ 시스템에어컨 설치 위치는 해당 실내에서 다소 조정될 수 있으며, 기능상 장애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및 기타 세대 내 조건에 따라 설치 위치의 조정이 발생 할 수 있음.
- ⑧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생산, 공급의 중단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질 및 동급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 선정된 제품의 형태, 설치위치 등의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 바람.
- ⑨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 시, 기 선정된 시스템에어컨 제조사 및 모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⑩ 세대 내 제공되는 시스템에어컨 컨트롤러는 무선으로 제공되며, 추후 유선 컨트롤러 마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⑪ 천장형 에어컨 선택 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추가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동 할 수 없음.
- ⑫ 드레스룸 제습기 유상옵선은 시스템에어컨 유상옵선을 선택한 세대에 한하여 선택이 가능함.
- ⑬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은 냉방 전용 제품으로 난방 운전이 불가하며, 운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⑭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및 유상옵선 계약이 불가함.
- ⑮ 견본주택에 설치된 에어컨은 견본주택용 냉, 난방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추가(유상)선택 품목의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사양과 상이하므로 계약 전 선택 제품의 사양과 모델을 확인하시기 바람.
- ⑯ 제조사와 모델은 품질-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 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음.
- ⑰ 빌트인 주방가전 미선택시 기본형 수납공간으로 시공되며,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⑱ 주방 가전 제품은 주방 구조에 따라 설치 위치가 상이할 수 있음.
- ⑲ 상기 주방 가전 옵션은 주택형별 선택 가능함.
- ⑳ 인덕션3구 전기쿡탑 옵션 선택 시에는 기본으로 제공되는 가스배관은 설치 되지 않음.(가스쿡탑 미설치)
- ㉑ 인덕션3구 전기쿡탑 옵션 선택시 가스배관은 주방발코니에 설치된 가스계량기까지만 설치됨.
- ㉒ 비스포크 냉장고 전면 패널의 색상은 1년단위로 변경되므로 비스포크 제품 계약자의 색상 선택을 위해 입주 6개월 전 별도의 안내를 드릴 예정임.
- ㉓ 59타입 비스포크 냉장고 선택 시 측면에 설치되는 수납장은 제공되지 않음.
- ㉔ 13인치 스마트주방 TV 옵션 미 선택 시 10인치 주방TV가 기본제공 됨.
- ㉕ 카다로그상 표기되는 각 실의 명칭은 카다로그 기준이나 설계변경 등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㉖ 상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 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으로 변경 될 수 있으며, 주택 형별 설치 위치 등 세부 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 바람.
- ㉗ 추가 선택 품목의 설치 위치는 지정되어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할 수 없음.(추가 선택품목의 위치 및 선택 항목은 분양홈페이지 또는 견본주택에서 확인 바람)
- ㉘ 추가 선택 품목은 본 아파트의 컨셉에 맞추어 디자인하고 품질 관리하는 품목으로 판매가 및 사양에 대해 교체 및 해약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사 및 기타, 시중 품목과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하시기 바람.
- ㉙ 추가 선택 품목은 견본주택에 설치된 세대에 일부 품목이 전시되오니 청약 및 계약시 확인하시기 바람.

유상옵션(플러스 및 가전옵션) 납부 계좌 및 납부 방법

납부 계좌			
계좌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옵션대금 수납계좌	우리은행	1005-004-739103	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

납부일정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계약시	아파트 중도금 3회차 납부일	입주시

-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인정하며, 견본주택에서 일체의 현금/수표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 101동 1001호 계약자 → '1011001홍길동' / 101동 201호 계약자 → '101201홍길동'

- 타인 명의 등 계약금의 납부 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문제에 대하여 사업 주체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상기 계좌로 납부 하지 아니한 공급금액은 인정치 않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X

참고사항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 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4항 및 제53조

검색대상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주택처분 기준일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 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남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해당 목에서 정하는 주거전용면적 및 가격 요건을 갖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가.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나목3)에 해당하지 않는 것: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6천만원) 이하일 것
 나. 다음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3억원(수도권은 5억원) 이하일 것
 1) 「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2)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3)에 해당하지 않는 것
 3)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조항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	주거전용면적	수도권	비수도권
제53조제9호가목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	60㎡ 이하	1억 6천만원	1억원
제53조제9호나목	단독주택	85㎡ 이하	5억원	3억원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가목2)를 준용함)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12.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일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이중 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 처리 및 계약 취소에 관한 사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4호

- 입주대상자 자격 확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부적격 사항에 대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내에 소명자료를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부적격 사항 소명 안내 : 관련기관의 전산시스템과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입주대상자의 현황이 상이할 수 있으며, 부적격 사항 및 적격여부 확인이 필요한 자료 통보된 경우 소명기간(7일) 내에 서류 확인등을 통하여 소명을 할 경우에만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계약체결 이후 관련 법령 등의 처리 및 검증으로 인한 당첨 및 계약취소 확인 : 계약체결 후에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자 또는 부정당첨자로 관리됩니다.
 - ① 1순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 주택 및 '분양권 등' 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참조
 - ②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혼인특례, 출산특례 제외)
 - ③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가 아닌 자가 가점제를 적용받아 당첨된 경우
 - ④ 위장전입,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 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 ⑤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 단, 부적격 당첨자는 당사 견본주택에 방문하여 '계좌보탈 요청서 (당사 비치)' 작성 시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며 당첨이 취소된 자는 공급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본 아파트의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상기 기준에 의거 주택소유 여부 판단 시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사실을 포함하며, 특별공급 및 1순위자(분리세대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는 국토교통부에 무주택 여부를 검색하여 부적격 당첨자를 판명합니다.
 - 부적격자로 판명됨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 등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 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계약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부정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명단관리(「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제3항 및 제57조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58조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한국부동산원)에 통보합니다.
-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한국부동산원)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58조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공급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동안 다른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봄. 다만, 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같은 순위(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함. 이하 이 항에서 같음)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2.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함)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함)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예비입주자 선정 시 제출한 청약신청 서류 검토 결과, 가점점수가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정한 가점점수가 다음 순위 예비입주자의 점수를 초과한 경우에만 예비입주자 자격이 유지될 수 있으며, 다음 순위 예비입주자 점수보다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예비입주자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XI 기타 계약자 안내

입주자 사전 방문안내 - 「주택법」 제48조의2, 동법 시행령 제53조의2 및 3,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및 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의2

- 당사는 사전방문을 주택공급 계약에 따라 정한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45일전까지 2일 이상 사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부터 2개월 전에 입주예정일을 통보하고,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부터 1개월 전에 입주예정일을 주택공급의 계약자에게 각각 통보할 예정입니다. 또한 입주지정기간은 60일 이상으로 하며, 정확한 일정은 추후 통보 예정입니다.

- 사전점검 진행절차

- ① 사전점검 안내문 발송 → ② 입주자 현장 도착 → ③ 접수, 교육 안내 → ④ 입주자점검 및 지적사항 작성 → ⑤ 점검사항 제출 → ⑥ 보수 → ⑦ 보수사항 확인

- 입주자 사전방문확인 제도 실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제27호, 「주택법」 제48조의2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의 2에 의거 도장공사·도배공사·가구공사·타일공사·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45일 전까지 2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입주자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사전방문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사전방문기간 시작일 1개월 전까지 별도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입주예정일 : 2028년 10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입주지정 개시일 2개월 전 통보함)

- 입주지정기간은 60일 이상으로 하며, 정확한 일정은 추후 통보 예정입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및 암반 발견, 원가 상승, 정부 정책이나 관계 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 시 단지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예치금을 부과하며,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
-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계약자의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합니다.
- 계약자는 입주지정기간 이내에 잔여 중도금 및 잔금, 연체료를 완납하고,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제반서류 및 비용(중도금대출 상환 영수증 또는 중도금대출에서 담보대출로 대환되는 은행 확인 서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제반서류 및 비용, 선수관리비 납부영수증 등)을 사업주체에게 제출 또는 납부 한 후에 입주증을 발급받아 입주하여야 합니다.

-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부대복리시설

- 경로당, 어린이집, 어린이놀이터, 관리사무소,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 피트니스, 골프연습장, 코인세탁실, 키즈카페, 독서실, 스카이가페, 게스트하우스, 다함께돌봄센터 등
- 단지내 부대시설물의 용도와 내부 시설물은 사업계획승인 도면에 의거하여 시공 및 설치될 예정이며, 그 결과물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기타공용시설(부대복리시설, 기계실, 주차장 등) 면적은 각 세대 전용면적에 따라 전체 세대로 균등하게 계산 배분되어 있으며, 입주 후 공용부분 관리비는 세대면적에 따라 균등부과 됩니다.
- 관리사무소, 지하주차장, 경비실 등 부대시설은 대관인허가를 통하여 실 시공시 위치, 다른 실로의 변경/통합, 사용자 동선, 입면형태, 실내구획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부대시설 등 단지 내 부대시설 사용 시 각 동별로 계단실, E/V등의 위치에 따라 거리차이와 동선의 편차가 있으므로 시설 배치 및 사용상의 문제에 대해 충분히 확인 바랍니다.
- ※ 일부 어린이놀이터 및 주민운동시설(실외)은 조정 및 시설물 계획 변경에 따라 견본주택 내 모형도 및 CG와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녹색건축 예비인증, 공동주택 성능등급,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공동주택 성능등급 인증서	녹색건축 예비 인증서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 예비인증서																																																																																																																																																																																																																																																																																					
<p>■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 8. 27.></p> <h3 style="text-align: center;">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h3> <p>1. 공동주택용: 강릉도 춘천시 등면 만천리 공동주택 신축공사 2. 신 정 자: 우리자산신탁㈜ 3. 대 지 위 치: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등면 만천리 외 10필지 4. 성 능 등 급</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h colspan="2">가. 소용 관련 등급</th> <th colspan="2">다. 환경 관련 등급</th> </tr> <tr> <td>상능항목</td> <td>성능등급</td> <td>상능항목</td> <td>성능등급</td> </tr> <tr> <td>1. 강령중격을 차단성능</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20. 연계된 녹지축 조성</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2. 중앙중격을 차단성능</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21. 자연지반 녹지율</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3. 세대 간 경계벽의 차음성능</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22. 생태관목을</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4. 고층소음(도중 밀도)에 대한 실내·외 소음도</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23. 벽소음 조성</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5. 도상성 급배수 소음</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24. 실내공기 오염물질 저방출 제품의 적용</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td> <td></td> <td>25. 자연 환기성 확보</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td> <td></td> <td>26. 단위세대 환기성능 확보</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td> <td></td> <td>27. 자동문도조일상지 설치 수준</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able> <p>나. 구조 관련 등급</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상능항목</td> <td>성능등급</td> </tr> <tr> <td>1. 내구성</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2. 가변성</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3. 수리용이성 전층부분</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4. 수리용이성 공용부분</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able> <p>다. 환경 관련 등급</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상능항목</td> <td>성능등급</td> </tr> <tr> <td>1. 기존 대지의 생태학적 가치</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2. 과도한 지형개발 방지</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3. 풍상사 정성토양 침식방지</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4. 일출로 건설방지 대책의 타당성</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5. 에너지 성능</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6. 에너지 모니터링 및 관리지표 설치</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7. 신·재생에너지 이용</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8. 저탄소 에너지원 기술의 적용</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9.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장물질의 사용 금지</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10. 환경친화성 제품(EPO)의 사용</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11. 저탄소 자재의 사용</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12. 자원순환 자재의 사용</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13. 유해물질 저감 자재의 사용</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14. 녹색건축자재의 적용 비율</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15. 재활용가능자재의 보편성 설치</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16. 재활관리</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17. 빗물 및 우수저류수 이용</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18. 광열·기후 시설</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19. 물 사용량 모니터링</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able> <p>라. 생활환경 관련 등급</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상능항목</td> <td>성능등급</td> </tr> <tr> <td>1. 단지내·외 보행자 친화도로 조성 및 연결</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2. 대중교통의 근접성</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3. 자연기후조건 및 자연기후로의 적합성</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4. 생활환경시설의 접근성</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5. 건설현장의 환경관리 계획</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6. 운동·유지관리 편의 및 쾌적성 제공</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7. 사용자 만족률 제공</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8. 녹색건축인증 관련 정보제공</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9. 단위세대의 사회적 약자배려</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10. 공용공간의 사회적 약자배려</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11. 커뮤니티 연례 및 시공공간의 조성수준</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12. 세대 내 일몰률 확보율</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13. 홀네트워크 중립시스템</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14. 방화안전 콘서트</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able> <p>마. 화재·소방 관련 등급</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상능항목</td> <td>성능등급</td> </tr> <tr> <td>1. 감지 및 경보설비</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2. 계면설비</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3. 내화성능</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4. 무연비난기</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5. 복도 유계연 유도노면</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6. 피난통로</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able> <p>「녹색건축을 조성 지원법」 제16조,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 및 「주택법」 제3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25년 06월 23일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장</p>	가. 소용 관련 등급		다. 환경 관련 등급		상능항목	성능등급	상능항목	성능등급	1. 강령중격을 차단성능	★	20. 연계된 녹지축 조성	★	2. 중앙중격을 차단성능	★★	21. 자연지반 녹지율	★	3. 세대 간 경계벽의 차음성능	★★★	22. 생태관목을	★	4. 고층소음(도중 밀도)에 대한 실내·외 소음도	★	23. 벽소음 조성	★	5. 도상성 급배수 소음	★★★	24. 실내공기 오염물질 저방출 제품의 적용	★★			25. 자연 환기성 확보	★			26. 단위세대 환기성능 확보	★★			27. 자동문도조일상지 설치 수준	★★	상능항목	성능등급	1. 내구성	★	2. 가변성	★★	3. 수리용이성 전층부분	★	4. 수리용이성 공용부분	★	상능항목	성능등급	1. 기존 대지의 생태학적 가치	★	2. 과도한 지형개발 방지	★	3. 풍상사 정성토양 침식방지	★	4. 일출로 건설방지 대책의 타당성	★	5. 에너지 성능	★★	6. 에너지 모니터링 및 관리지표 설치	★	7. 신·재생에너지 이용	★	8. 저탄소 에너지원 기술의 적용	★★	9.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장물질의 사용 금지	★	10. 환경친화성 제품(EPO)의 사용	★★★	11. 저탄소 자재의 사용	★★★	12. 자원순환 자재의 사용	★★	13. 유해물질 저감 자재의 사용	★★	14. 녹색건축자재의 적용 비율	★	15. 재활용가능자재의 보편성 설치	★★★	16. 재활관리	★	17. 빗물 및 우수저류수 이용	★	18. 광열·기후 시설	★★	19. 물 사용량 모니터링	★★	상능항목	성능등급	1. 단지내·외 보행자 친화도로 조성 및 연결	★	2. 대중교통의 근접성	★★	3. 자연기후조건 및 자연기후로의 적합성	★★	4. 생활환경시설의 접근성	★★★	5. 건설현장의 환경관리 계획	★★★	6. 운동·유지관리 편의 및 쾌적성 제공	★★★	7. 사용자 만족률 제공	★★★	8. 녹색건축인증 관련 정보제공	★	9. 단위세대의 사회적 약자배려	★	10. 공용공간의 사회적 약자배려	★	11. 커뮤니티 연례 및 시공공간의 조성수준	★★★	12. 세대 내 일몰률 확보율	★	13. 홀네트워크 중립시스템	★	14. 방화안전 콘서트	★	상능항목	성능등급	1. 감지 및 경보설비	★	2. 계면설비	★	3. 내화성능	★	4. 무연비난기	★★	5. 복도 유계연 유도노면	★	6. 피난통로	★	<h3 style="text-align: center;">녹색건축 예비 인증서</h3> <div style="text-align: right;"> </div>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h colspan="2">[건축물 개요]</th> <th colspan="2">[인증 개요]</th> </tr> <tr> <td>건축물명</td> <td>강릉도 춘천시 등면 만천리 공동주택 신축공사</td> <td>인증번호</td> <td>G-SEED-P-2025-0592-7</td> </tr> <tr> <td>건축주</td> <td>우리자산신탁</td> <td>인증기관</td> <td>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td> </tr> <tr> <td>준공(예정)일</td> <td>2028년 10월 31일</td> <td>유효기간</td> <td>2025.6.23. - 사용승인일</td> </tr> <tr> <td>주 소</td> <td>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등면 만천리 외 10필지</td> <td></td> <td></td> </tr> <tr> <td>층 수</td> <td>지하 4층, 지상 29층 / 350세대</td> <td>[인증 등급]</td> <td>합격(인증/공동주택)</td> </tr> <tr> <td>면 적</td> <td>99,830.4327㎡(용기면적: 99,540.1151㎡)</td> <td>인증유형</td> <td>녹색건축 인증등급</td> </tr> <tr> <td>건축물의 주인 용도</td> <td>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td> <td>인증기준</td> <td>국토교통부시 제2023-329호</td> </tr> <tr> <td>설 계 자</td> <td>대원종합건축사사무소</td> <td>항상부호시</td> <td>제2023-172호</td> </tr> </table> <p>위 건축물은 「녹색건축을 조성 지원법」 제16조 및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3항에 따라 녹색건축(일반 등급)건축물로 인증되었기에 인증서를 발급합니다.</p> <div style="text-align: center;"> <p>[분야별평가] 종합등급 ★ ★ ★ ★</p> </div> <p style="text-align: center;">2025년 6월 23일</p> <div style="text-align: center;"> <p>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p> </div>	[건축물 개요]		[인증 개요]		건축물명	강릉도 춘천시 등면 만천리 공동주택 신축공사	인증번호	G-SEED-P-2025-0592-7	건축주	우리자산신탁	인증기관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준공(예정)일	2028년 10월 31일	유효기간	2025.6.23. - 사용승인일	주 소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등면 만천리 외 10필지			층 수	지하 4층, 지상 29층 / 350세대	[인증 등급]	합격(인증/공동주택)	면 적	99,830.4327㎡(용기면적: 99,540.1151㎡)	인증유형	녹색건축 인증등급	건축물의 주인 용도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인증기준	국토교통부시 제2023-329호	설 계 자	대원종합건축사사무소	항상부호시	제2023-172호	<h3 style="text-align: center;">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 예비인증서</h3> <p>■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별지 제 6호 서식) <개정 2017.1.20></p> <h3 style="text-align: center;">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h3>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h colspan="2">건축물 개요</th> <th colspan="2">인증 개요</th> </tr> <tr> <td>건축물명</td> <td>강릉도 춘천시 등면 만천리 공동주택 신축공사</td> <td>인증번호</td> <td>25-주-제-14-0056</td> </tr> <tr> <td>건축연도</td> <td>2025/06/23</td> <td>평가자</td> <td>박종만</td> </tr> <tr> <td>주 소</td> <td>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등면 만천리 외 10필지</td> <td>인증기관</td> <td>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td> </tr> <tr> <td>층 수</td> <td>지하 4층, 지상 19~29층 (6개층)</td> <td>유효기간</td> <td>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td> </tr> <tr> <td>면적</td> <td>지하 4층 지상 19~29층 (6개층)</td> <td>유요기간</td> <td>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 완료일</td> </tr> <tr> <td>건축물의 주인 용도</td> <td>공동주택</td> <td></td> <td></td> </tr> <tr> <td>설계자</td> <td>(주)대원종합건축사사무소</td> <td></td> <td></td> </tr> </table> <p style="text-align: right;">인증등급 : 1등급</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h colspan="5">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결과</th> </tr> <tr> <th>단위면적당 에너지소비량 (kWh/㎡·년)</th> <th>요구량</th> <th>등급</th> <th>단위면적당 CO₂ 배출량 (kg/㎡·년)</th> <th>태양량</th> </tr> <tr> <td>에너지 저소비량 건축성격</td> <td>100</td>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d>48</td> <td style="text-align: center;">28.0</td> </tr> <tr> <td>에너지중립 건축성격</td> <td>83.4</td> <td></td> <td>56</td> <td></td> </tr> <tr> <td>에너지저소비 건축성격</td> <td></td> <td></td> <td>64</td> <td></td> </tr> <tr> <td>에너지보통 건축성격</td> <td></td> <td></td> <td>72</td> <td></td> </tr> <tr> <td>에너지다소비 건축성격</td> <td></td> <td></td> <td></td> <td></td> </tr> </table>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h colspan="5">에너지 성능별 평가결과</th> </tr> <tr> <th>구분</th> <th>단위면적당 에너지소비량 (kWh/㎡·년)</th> <th>단위면적당 에너지소비량 (kWh/㎡·년)</th> <th>1회 에너지소비량 (kWh/㎡·년)</th> <th>단위면적당 CO₂ 배출량 (kg/㎡·년)</th> </tr> <tr> <td>냉방</td> <td>0.0</td> <td>0.0</td> <td>0.0</td> <td>0.0</td> </tr> <tr> <td>난방</td> <td>45.4</td> <td>77.5</td> <td>59.5</td> <td>16.1</td> </tr> <tr> <td>급탕</td> <td>30.7</td> <td>33.6</td> <td>25.0</td> <td>6.9</td> </tr> <tr> <td>조명</td> <td>7.5</td> <td>7.5</td> <td>20.6</td> <td>3.5</td> </tr> <tr> <td>합계</td> <td></td> <td>3.2</td> <td>8.9</td> <td>1.5</td> </tr> <tr> <td>총계</td> <td>83.8</td> <td>114.0</td> <td></td> <td>28.0</td> </tr> </table> <p>■ 단위면적당 에너지요구량: 건축물에 냉방, 난방, 급탕, 조명 부분에서 요구되는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에너지소비량: 건축물에 냉방, 난방, 급탕, 조명, 환기시스템에서 드는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1회 에너지소비량: 에너지소비량에 연료의 개질, 가열, 운송, 변환, 공급 과정 등의 손실을 포함한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CO₂ 배출량: 에너지 소비량에서 산출된 단위면적당 이산화탄소 배출량</p> <p>※ 이 건물은 냉방설비가() 설치된 [V] 불필요(지정)건축물입니다. ※ 예비인증 받은 건축물은 중공 투과 현상열을 받아야 하며, 설계변경에 따라 인증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단위면적당 1회에너지소비량은 용도 등에 따른 보정계수를 반영한 결과입니다.</p> <p>위 건축물은 「녹색건축을 조성 지원법」 제 17조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에너지효율등급(1등급)건축물로 인증되었기에 예비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25년 04월 25일</p> <div style="text-align: center;"> <p>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p> </div>	건축물 개요		인증 개요		건축물명	강릉도 춘천시 등면 만천리 공동주택 신축공사	인증번호	25-주-제-14-0056	건축연도	2025/06/23	평가자	박종만	주 소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등면 만천리 외 10필지	인증기관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층 수	지하 4층, 지상 19~29층 (6개층)	유효기간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면적	지하 4층 지상 19~29층 (6개층)	유요기간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 완료일	건축물의 주인 용도	공동주택			설계자	(주)대원종합건축사사무소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결과					단위면적당 에너지소비량 (kWh/㎡·년)	요구량	등급	단위면적당 CO ₂ 배출량 (kg/㎡·년)	태양량	에너지 저소비량 건축성격	100	1	48	28.0	에너지중립 건축성격	83.4		56		에너지저소비 건축성격			64		에너지보통 건축성격			72		에너지다소비 건축성격					에너지 성능별 평가결과					구분	단위면적당 에너지소비량 (kWh/㎡·년)	단위면적당 에너지소비량 (kWh/㎡·년)	1회 에너지소비량 (kWh/㎡·년)	단위면적당 CO ₂ 배출량 (kg/㎡·년)	냉방	0.0	0.0	0.0	0.0	난방	45.4	77.5	59.5	16.1	급탕	30.7	33.6	25.0	6.9	조명	7.5	7.5	20.6	3.5	합계		3.2	8.9	1.5	총계	83.8	114.0		28.0
가. 소용 관련 등급		다. 환경 관련 등급																																																																																																																																																																																																																																																																																					
상능항목	성능등급	상능항목	성능등급																																																																																																																																																																																																																																																																																				
1. 강령중격을 차단성능	★	20. 연계된 녹지축 조성	★																																																																																																																																																																																																																																																																																				
2. 중앙중격을 차단성능	★★	21. 자연지반 녹지율	★																																																																																																																																																																																																																																																																																				
3. 세대 간 경계벽의 차음성능	★★★	22. 생태관목을	★																																																																																																																																																																																																																																																																																				
4. 고층소음(도중 밀도)에 대한 실내·외 소음도	★	23. 벽소음 조성	★																																																																																																																																																																																																																																																																																				
5. 도상성 급배수 소음	★★★	24. 실내공기 오염물질 저방출 제품의 적용	★★																																																																																																																																																																																																																																																																																				
		25. 자연 환기성 확보	★																																																																																																																																																																																																																																																																																				
		26. 단위세대 환기성능 확보	★★																																																																																																																																																																																																																																																																																				
		27. 자동문도조일상지 설치 수준	★★																																																																																																																																																																																																																																																																																				
상능항목	성능등급																																																																																																																																																																																																																																																																																						
1. 내구성	★																																																																																																																																																																																																																																																																																						
2. 가변성	★★																																																																																																																																																																																																																																																																																						
3. 수리용이성 전층부분	★																																																																																																																																																																																																																																																																																						
4. 수리용이성 공용부분	★																																																																																																																																																																																																																																																																																						
상능항목	성능등급																																																																																																																																																																																																																																																																																						
1. 기존 대지의 생태학적 가치	★																																																																																																																																																																																																																																																																																						
2. 과도한 지형개발 방지	★																																																																																																																																																																																																																																																																																						
3. 풍상사 정성토양 침식방지	★																																																																																																																																																																																																																																																																																						
4. 일출로 건설방지 대책의 타당성	★																																																																																																																																																																																																																																																																																						
5. 에너지 성능	★★																																																																																																																																																																																																																																																																																						
6. 에너지 모니터링 및 관리지표 설치	★																																																																																																																																																																																																																																																																																						
7. 신·재생에너지 이용	★																																																																																																																																																																																																																																																																																						
8. 저탄소 에너지원 기술의 적용	★★																																																																																																																																																																																																																																																																																						
9.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장물질의 사용 금지	★																																																																																																																																																																																																																																																																																						
10. 환경친화성 제품(EPO)의 사용	★★★																																																																																																																																																																																																																																																																																						
11. 저탄소 자재의 사용	★★★																																																																																																																																																																																																																																																																																						
12. 자원순환 자재의 사용	★★																																																																																																																																																																																																																																																																																						
13. 유해물질 저감 자재의 사용	★★																																																																																																																																																																																																																																																																																						
14. 녹색건축자재의 적용 비율	★																																																																																																																																																																																																																																																																																						
15. 재활용가능자재의 보편성 설치	★★★																																																																																																																																																																																																																																																																																						
16. 재활관리	★																																																																																																																																																																																																																																																																																						
17. 빗물 및 우수저류수 이용	★																																																																																																																																																																																																																																																																																						
18. 광열·기후 시설	★★																																																																																																																																																																																																																																																																																						
19. 물 사용량 모니터링	★★																																																																																																																																																																																																																																																																																						
상능항목	성능등급																																																																																																																																																																																																																																																																																						
1. 단지내·외 보행자 친화도로 조성 및 연결	★																																																																																																																																																																																																																																																																																						
2. 대중교통의 근접성	★★																																																																																																																																																																																																																																																																																						
3. 자연기후조건 및 자연기후로의 적합성	★★																																																																																																																																																																																																																																																																																						
4. 생활환경시설의 접근성	★★★																																																																																																																																																																																																																																																																																						
5. 건설현장의 환경관리 계획	★★★																																																																																																																																																																																																																																																																																						
6. 운동·유지관리 편의 및 쾌적성 제공	★★★																																																																																																																																																																																																																																																																																						
7. 사용자 만족률 제공	★★★																																																																																																																																																																																																																																																																																						
8. 녹색건축인증 관련 정보제공	★																																																																																																																																																																																																																																																																																						
9. 단위세대의 사회적 약자배려	★																																																																																																																																																																																																																																																																																						
10. 공용공간의 사회적 약자배려	★																																																																																																																																																																																																																																																																																						
11. 커뮤니티 연례 및 시공공간의 조성수준	★★★																																																																																																																																																																																																																																																																																						
12. 세대 내 일몰률 확보율	★																																																																																																																																																																																																																																																																																						
13. 홀네트워크 중립시스템	★																																																																																																																																																																																																																																																																																						
14. 방화안전 콘서트	★																																																																																																																																																																																																																																																																																						
상능항목	성능등급																																																																																																																																																																																																																																																																																						
1. 감지 및 경보설비	★																																																																																																																																																																																																																																																																																						
2. 계면설비	★																																																																																																																																																																																																																																																																																						
3. 내화성능	★																																																																																																																																																																																																																																																																																						
4. 무연비난기	★★																																																																																																																																																																																																																																																																																						
5. 복도 유계연 유도노면	★																																																																																																																																																																																																																																																																																						
6. 피난통로	★																																																																																																																																																																																																																																																																																						
[건축물 개요]		[인증 개요]																																																																																																																																																																																																																																																																																					
건축물명	강릉도 춘천시 등면 만천리 공동주택 신축공사	인증번호	G-SEED-P-2025-0592-7																																																																																																																																																																																																																																																																																				
건축주	우리자산신탁	인증기관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준공(예정)일	2028년 10월 31일	유효기간	2025.6.23. - 사용승인일																																																																																																																																																																																																																																																																																				
주 소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등면 만천리 외 10필지																																																																																																																																																																																																																																																																																						
층 수	지하 4층, 지상 29층 / 350세대	[인증 등급]	합격(인증/공동주택)																																																																																																																																																																																																																																																																																				
면 적	99,830.4327㎡(용기면적: 99,540.1151㎡)	인증유형	녹색건축 인증등급																																																																																																																																																																																																																																																																																				
건축물의 주인 용도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인증기준	국토교통부시 제2023-329호																																																																																																																																																																																																																																																																																				
설 계 자	대원종합건축사사무소	항상부호시	제2023-172호																																																																																																																																																																																																																																																																																				
건축물 개요		인증 개요																																																																																																																																																																																																																																																																																					
건축물명	강릉도 춘천시 등면 만천리 공동주택 신축공사	인증번호	25-주-제-14-0056																																																																																																																																																																																																																																																																																				
건축연도	2025/06/23	평가자	박종만																																																																																																																																																																																																																																																																																				
주 소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등면 만천리 외 10필지	인증기관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층 수	지하 4층, 지상 19~29층 (6개층)	유효기간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면적	지하 4층 지상 19~29층 (6개층)	유요기간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 완료일																																																																																																																																																																																																																																																																																				
건축물의 주인 용도	공동주택																																																																																																																																																																																																																																																																																						
설계자	(주)대원종합건축사사무소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결과																																																																																																																																																																																																																																																																																							
단위면적당 에너지소비량 (kWh/㎡·년)	요구량	등급	단위면적당 CO ₂ 배출량 (kg/㎡·년)	태양량																																																																																																																																																																																																																																																																																			
에너지 저소비량 건축성격	100	1	48	28.0																																																																																																																																																																																																																																																																																			
에너지중립 건축성격	83.4		56																																																																																																																																																																																																																																																																																				
에너지저소비 건축성격			64																																																																																																																																																																																																																																																																																				
에너지보통 건축성격			72																																																																																																																																																																																																																																																																																				
에너지다소비 건축성격																																																																																																																																																																																																																																																																																							
에너지 성능별 평가결과																																																																																																																																																																																																																																																																																							
구분	단위면적당 에너지소비량 (kWh/㎡·년)	단위면적당 에너지소비량 (kWh/㎡·년)	1회 에너지소비량 (kWh/㎡·년)	단위면적당 CO ₂ 배출량 (kg/㎡·년)																																																																																																																																																																																																																																																																																			
냉방	0.0	0.0	0.0	0.0																																																																																																																																																																																																																																																																																			
난방	45.4	77.5	59.5	16.1																																																																																																																																																																																																																																																																																			
급탕	30.7	33.6	25.0	6.9																																																																																																																																																																																																																																																																																			
조명	7.5	7.5	20.6	3.5																																																																																																																																																																																																																																																																																			
합계		3.2	8.9	1.5																																																																																																																																																																																																																																																																																			
총계	83.8	114.0		28.0																																																																																																																																																																																																																																																																																			

내진 성능 및 능력 공개 - 「건축법」 제48조 제3항 및 제48조의3 제2항

- 본 시설은 건축법 제48조 제3항에 따라 내진성능을 확보한 공동주택입니다.
- 내진 성능 관련 : 본 건축물은 건축구조기준(KDS 41 00 00)에 따라 내진능력 (진도MMI - VII 0.1800g)으로 계획되었습니다.

지하주차장 높이

구 분	주차장 차로의 높이	주차장 출입구의 높이
주차장 B1,B2,B3	2.7m (단, 주차공간은 2.1m 이상)	2.7m
주차장 B4	2.3m (단, 주차공간은 2.1m 이상)	2.3m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의거 주행통로의 높이는 2.3m이상입니다. (추후 이를 사유로 해당 관청, 사업주체, 시공사 등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차에 사용되는 부분의 높이는 주차바닥면으로부터 최소 2.1m이상으로 설치하였으며, 추후 이를 사유로 해당 관청, 사업주체, 시공사 등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

-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제37조, 동법시행령 제36조, 제37조, 제38조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 동법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적용됩니다.

친환경 주택의 성능 수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1호

구 분	적용여부	비 고	
고단열 고기밀 현관문	적 용	2등급	
창의 기밀성능 (세대 직접외기 이중창)	적 용	1등급	
건축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2항 제1호)	단열조치 준수 (가목)	적 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 준수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 (나목)	적 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 준수
	방습층 설치 (다목)	적 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4호에 의한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 준수
기계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2항 제2호)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 (가목) (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적 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1호에 의한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 (나목)	적 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 준수
	고효율 가정용보일러 (다목)	적 용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 제품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대상 제품별 인증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
	고효율 전동기 (라목)	적 용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 또는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

	고효율 난방 급탕 급수펌프 (마목)	적 용	난방, 급탕 및 급수펌프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 받은 제품을 사용하거나 그 평균 효율이 KS규격에서 정해진 기준 효율의 1.12배 이상의 제품을 사용
	절수형설비 설치 (바목)	적 용	수도법 제15조 및 수도법시행규칙 제1조의2, 별표1에 따른 절수형 설비로 설치
	실별 온도조절장치 (사목)	적 용	각 실별난방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온도조절장치 설치
전기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2항 제3호)	수변전설비 설치 (가목)	적 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1호에 의한 수변전설비 설치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 (나목)	적 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
	조명설치 (다목)	적 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 설치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 (마목)	적 용	단지 내의 공용화장실에는 화장실 사용여부에 따라 자동으로 점멸되는 스위치 설치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부가세포함가)

구 분	건축	전기	소방	통신
감리회사	(주)범도시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주)간삼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주)한성테크	(주)산이앤씨건축사사무소
계약금액	2,956,904,500원	732,415,000원	1,007,554,820원	412,500,000원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 분	시행수탁	시행위탁	시공사
법인명	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	주식회사 씨앤위	동문건설 주식회사
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1, 10층 (역삼동, 삼성빌딩)	서울특별시 강남구 밤고개로1길 10, 805호 (수서동, 수서현대벤처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길 25, 8층 (하남빌딩)
법인등록번호	110111-2003236	110111-8262571	110111-0368426

관리형태지신탁

본 공급물건은 안정적인 진행을 위해 「신탁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위탁자 주식회사 씨앤위, 시행수탁자 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 및 시공사 동문건설 주식회사, 대출기관 겸 우선수익자 간 체결한 관리형태지신탁계약(이하 "신탁계약"이라 함) 방식으로 시행 및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을"은 다음 사항을 인지하여야 하며, 본 조항은 분양계약서 다른 조항에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 (1) 분양계약서에 명시된 "분양수입금계좌"로 입금하지 아니한 어떠한 다른 형태의 입금 및 납부도 이를 정당한 납부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 (2) 분양수입금은 토지비, 공사비, 대출금의 상환 등으로 사용될 수 있다.
- (3) 본 공급물건은 위탁자 주식회사 씨앤위와 수탁자 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 사이에 체결한 관리형태지신탁계약에 따라 공급하는 것이며, 신탁해지 또는 신탁목적 달성 등의 사유로 신탁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그 즉시 모든 공급계약에 대하여, 개별 공급계약에 따라 수분양자(매수인)에게 공급 대상 목적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즉시 해당 공급계약에 대하여, 공급자이자 매도인으로서 수탁자가 가지는 일체의 권리와 의무(하자보수 등 매도인의 담보책임과 기타 손해배상의무를 포함하되, 이에 한하지 아니함)는 계약변경 등 별도의 조치 없이 위탁자 주식회사 씨앤위에게 면책적·포괄적으로 이전(승계)된다. 매수인(수분양자)은 이러한 내용을 숙지하고 이에 대하여 우리자산신탁(주)에게 일체의 이익을 제기하지 아니한다.

- (4) 신탁부동산의 하자보수에 관한 책임은 관련 법령에 의한다. 다만, 수탁자는 신탁이 종료(수분양자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신탁계약이 일부 종료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이후에는 수분양자에 대하여 신탁부동산에 대한 하자보수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 (5) 위탁자 및/또는 분양대행사(소속 임직원 포함)는 수탁자의 승인없이 단독으로 또는 수분양자와 합의하여 본 분양계약을 해제하는 행위, 본 분양계약의 내용·효력을 변경하거나 상실시키는 행위, 수분양자의 분양대금·연체료·위약금채무 등을 감면하는 행위, 수분양자가 납부하는 분양대금 등을 직접 수령하는 행위, 수분양자에게 본 분양계약의 내용과 상충되거나 본 분양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들의 이행을 요구하거나 약속·확약하는 행위 등 일체를 할 수 없으며, 본 분양계약상 수탁자의 권한을 행사하거나 수탁자를 대리하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 다만, 위탁자는 ㉠수분양자가 본 분양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지체하거나 위반하는 경우 수분양자에 대한 이행최고 또는 위반사항 시정촉구 통지 ㉡수분양자에 대한 본 분양목적물의 입주지정일(또는 입주지정기간)을 통지하는 행위에 한하여 수탁자를 대신하여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6) 본 아파트“대상사업”의 시행권 및 분양자(또는 임대인)로서의 권리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수분양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시행권 인수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도 시행자 및 분양자(또는 임대인)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한다.
- (7) 위탁자가“대상사업”의 위탁자로서의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수분양자(매수인)가 수탁자로부터 위탁자 지위의 변경사실을 통보받은 때에는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도 이를 승인한 것으로 한다.
- (8) 시공사가“대상사업”의 시공자로서의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수분양자(매수인)가 수탁자로부터 시공사 지위의 변경사실을 통보받은 때에는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도 이를 승인한 것으로 한다.
- (9) 분양자(매도인 또는 임대인)는 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수분양자(매수인 또는 임차인)에 대한 분양대금채권 또는 임대수입금(임대보증금, 월임대료, 분양전환금 등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할 일체의 금원을 포함한다)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양도하고 수분양자는 이를 이익없이 승낙하기로 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주요 금액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	보증기간
제 01282025-101-0004500 호	이천구십일억오천육십구만원정 ₩209,150,690,000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부터 건물 소유권보존등기일 (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 본 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입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보증사고, 보증 채무의 내용,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 입주금 등의 납부)

제1조 (보증채무의 내용)

공사는 「주택도시보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금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 【공 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친
- 【환금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제2조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 입주금 등의 납부)

-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허위계약·이중계약 등 정상 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 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허위계약】 분양 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유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 분양 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 납부 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증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증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새시, 마이너스오피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다만, 사양선택 품목과 관련한 금액이 보증금액에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 ② 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제4조 (보증사고)

- ① 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② 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려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같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 분양계약자는 사업 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 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 사업주체는 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수분양자에 대한 분양대금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양도하고 수분양자는 이를 이의없이 승낙한 것으로 한다.
 - ※ 사업주체가 본 “대상사업”의 시행권 및 분양자로서의 권리를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수분양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시행권 인수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도 시행자 및 분양자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한다.
 - ※ 아파트 공사 진행 정보 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 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XII 유의사항

다음과 같은 주요사항을 숙지하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 및 등기, 면적정산

- 입주 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계약 이후 관련법에서 정하는 경미한 변경사항 발생시 사업주체의 결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모든 공용시설(관리사무소, 경로당, 지하주차장 등)은 아파트 입주민과 공동 사용합니다.
- 시공 중 문화재 발굴이 필요한 유적출토 시 문화재 처리에 따른 소요기간으로 인한 입주 지연 시 입주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지체보상금 지급하지 않음)
- 시공 중 천재지변, 입만 발견, 전염병,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 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 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 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지체보상금 지급하지 않음)
- 세대당 공급면적과 대지면적은 공부정리절차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변동될 수 있으나 증감이 있을 때에는 분양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상호 정산하기로 합니다.(단, 세대당 증감면적이 소수점 이하일 경우, 정산하지 않음)
- 본 아파트는 기반시설공사 준공 지연 등으로 대지의 이전등기가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고, 확정 측량에 따라 대지 지분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면적표현은 소수점 4째자리 제곱미터(㎡) 까지 표현되며 (면적산출근거에 의해 소수점 5째자리에서 버림처리), 공용면적을 세대별로 분배할 경우 주거전용면적 비율 기준으로 소수점 4째자리 (소수점 5째자리에서 반올림)까지 산출 후 전체 총면적을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우선순위로 0.01㎡ 이내 만큼 강제 조정하여 오차를 최소화하며, 이에 따라 소수점 4째자리에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변경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기로 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은 공동주택의 복리시설이면서 별도의 분양시설로서 공동주택단지와 대지 분할 등 별도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각 대지분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으며, 차후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설계변경을 요구할 수 없고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설계 변경 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설 대지측량 결과, 관련법규의 변경, 인·허가의 변경, 사업계획승인 변경 및 신고, 대지분 등에 따라 본 계약물건의 건본주택(실물주택), 단지배치, 단지 내 도로선형, 조경(수목, 수경, 시설물,포장 등), 동호수별 위치, 각종 인쇄물과 모형도상의 구획선, 단지 내 시설물의 위치, 설계도면 등의 표시, 대지분 및 공급면적 등이 계약체결일 이후 입주 시까지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계약자의 개별 동의는 별도로 받지 않습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 및 공급계약서와 기타 홍보물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주자모집공고 및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 적용됩니다.
- 단지내부 남서측 대지경계선측 비상차로 하부에 154kV 자중송전선로가 설치되며, 입주 이후 한국전력공사에서 아파트 대지에 대한 구분지상권(준속기간 : 영구, 지료없음)을 설정하여 유지관리할 예정입니다.
- 단지내부 자중송전선로 설치 구간은 아파트 대지에 포함되며 별도로 분할, 분리, 정산, 보상 등의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 단지 외부여건

- 사전에 사업부지 현황을 직접 방문하여 전체적인 단지 및 주변여건(옹벽, 혐오시설 유무, 고압선 지중화,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냄새 유발시설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 및 주변 개발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실제 시공 시 대지면적, 연면적, 용적률, 주차대수 및 조경면적, 자연 지반면적, 인공지반 녹지면적 등은 축소 또는 증가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시행자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배치상 기계실, 전기실, 주차장, 급배기타워 및 분리수거함, 자전거보관소, 천창 등의 위치에 따라 저층부 세대의 조망권 및 환경권 침해 받을 수 있으며, 위치나 수량등은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건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설치 예정인 쓰레기분리수거 보관시설 및 음식물처리시설 등은 동별로 이용 거리에 차이가 있으며, 인접한 세대의 경우 해충, 냄새 및 분진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쓰레기 수거차량의 상시 접근으로 인한 소음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나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사업지의 대지 경계선 주위 개발계획, 아파트 진·출입 도로(보도 포함), 단지 외부(경계) 도로 및 도로 선형, 변경은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주변 환경 및 외부 여건 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사업승인변경이 수반 될 수 있고, 설계변경 시 개별 동의를 별도로 받지 아니합니다.(동의 받은 것으로 간주함)
- 단지 주변 도로 및 인접 대지와와의 레벨 차이로 인하여 단지 내,외부 일부구간에 옹벽, 자연석쌓기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추후 인허가 조건, 행정관서의 지침 또는 주변 단지 민원 및 미관 구조물의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설치 위치 및 높이, 옹벽 마감 및 디자인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남서측 경계부근 단지내 도로 아래에 154KV 지중화 송전선로가 설치되어 영구준치 운용됩니다.
- 향후 입주 후에도 주변 건축물 및 도로공사가 진행 될 수 있어 먼지, 소음 발생 및 통행 불편, 일조, 조망, 사생활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외 조경 및 세부 식재 계획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외부시설물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을 청약 접수 전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용검사 때와 달리 입주 후 교통량 증가 등 주변 여건 변화로 소음이 심화 될 경우에는 행정청에 이의제기 및 보상 요구를 할 수 없으므로 소음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분양계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외부 남동측 현황 경사고는 실제 시공 시 인허가 및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외부 남동측에 지중화철탑 2기(높이:약34M/약53M)가 설치되어 104,105,106동 일부세대에서 시야의 간섭이 있을 수 있으며 106동 남측 산책로를 통해 전력공급부지(지중화철탑)로 통행하는 통행로가 연결될 수 있으며, 전력공급부지(지중화철탑) 점검을 위해 점검업체가 유지관리·점검할 수 있으니 반드시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모형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외부 북서측에 지중화철탑 2기(높이:약34M/약53M)가 설치되어 103동 일부세대에서 시야의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의거 교류 특고압 가공전선로에서 발생하는 극저주파 전자기장은 지표상 1m에서 전계가 3.5kV/m 이하, 자계가 83.3μT 이하가 되도록 사설합니다.
- 사용전압 154kV의 울타리, 담 등으로부터 충전부분까지의 거리의 합계는 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 따라 6m이상으로 규정되어있고, 당사업지 남동측에 위치한 케이블타워에서 사업부지 경계까지의 직선 거리는 약 73m이며, 해당 케이블타워는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자원부 고시 제2006-65호)에 따라 설치될 예정입니다.
- 단지내부 남서측 대지경계선측 비상차로 하부에 지중송전선이 설치되며 지중화철탑의 위치와 높이는 실시공 및 인허가과정에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북서측은 20m도로와 인접하고 있으며 도로 경사로 인해 단지와 -1.4~-1.1m의 레벨차가 발생하며, 이와 인접한 101동,102동,103동은 차량 통행으로 인한 소음,진동,매연,분진등이 발생 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남서측은 인근 공동주택 및 업무시설이 인접하고 있으며, 단지 지상층(GL+110.5, GL+105.8, GL+100.4)과 +5.8~+2.0m레벨차가 발생하여 이로인해 일부구간에 옹벽이 설치될 예정이며, 일부구간은 실시공 시 인허가 절차 및 인근 주택 및 업무시설과 협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남동측은 현황 경사지가 인접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단지와 약+6.2m~약-5.2m 레벨차가 발생하여 일부구간에 조경석쌓기 또는 옹벽이 설치됩니다.
- 단지 북동측은 기존 주택 및 상가건물(정비소, 건재소등)이 위치하고 있어, 일부 세대는 소음, 일조권, 조망권 등 환경권 및 프라이버시 등의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101동 북측의 단지 부출입구는 단지 지상층(GL+95.2)과 +5.5m의 레벨차가 발생하여 직접적인 접근이 불가하며 101동 동측에 설치된 외부계단 및 엘리베이터를 통해 지상층(GL+95.2)으로 접근가능합니다.
- 101동 서측의 단지 주출입구는 101동과 동일레벨(GL+95.2)보행자 진입이 가능하나 단지 지상층(GL+100.4/GL+105.8)과 +5.2~10.6m의 레벨차가 발생하여 직접적인 접근이 불가하며, 102동 1호세대 서측 및 102동 6호세대 동측에 설치된 외부계단 및 엘리베이터를 통해 도로로 지상층(GL+100.4) 접근이 가능합니다.
- 105동,106동 지상층(GL+105.8)은 102,103,104동 지상층(GL+100.4)과 +5.4m의 레벨차가 발생하여 직접적인 접근이 불가하며, 105동 2호세대 동측에 설치된 외부계단 및 엘리베이터를 통해 도로로 접근 가능합니다.
- 단지 북서측은 후석로와 인접하고 있어 이와 인접한 101, 102, 103동은 차량 통행으로 인한 소음, 진동, 매연, 분진 등이 발생 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주출입구는 102동 지하 램프로 연결되어 있어 102동은 차량 통행으로 인한 소음, 진동, 매연, 분진 등이 발생 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부출입구는 101동 지하 램프로 연결되어 있어 101동은 차량 통행으로 인한 소음, 진동, 매연, 분진 등이 발생 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부출입구는 101동 북동측으로 통학버스정류장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 단지 남동측은 임야녹지와 접하고 있으며, 단지와 +0.5~3.0m의 레벨차가 발생하여 조경석 및 옹벽으로 설치될 예정이며, 주변 환경 및 구조검토에 따라 설치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04동, 106동 앞 어린이놀이2와 보차도의 단차가 최대 5.4m로서 105동 전면에 계단 조성 및 엘리베이터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 단지 동측 어린이집과 커뮤니티 광장 부지의 단차가 최대 5.2m로서 102동 동측에 계단 조성 및 엘리베이터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 단지 동측 어린이놀이터-2와 106동 단차가 최대 4.7m로서 106동 동측에 계단 조성 및 엘리베이터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 단지내 보차 혼용도로는 관리차량 및 소방차 진입을 위한 도로로서 일반차량은 출입이 통제 됩니다.
- 단지 주변 완충녹지 및 경관, 도로는 단지와 연결되지 않을 수 있으며 레벨 차이가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차이가 더 발생할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 전시된 모형은 예시사항으로 실제상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101, 102동 사이 주출입구는 단지 지상층과 5.5m 가량의 레벨차가 발생하며, 102동 1호 세대 위치하는 외부 계단, 외부 엘리베이터, 차량용 경사램프를 통해 지상층으로 접근이 가능하며, 102동은 주출입구 레벨에서 지하2층으로 연결되어 주동으로 직접적인 접근이 가능합니다.
- 101동 옆 부출입구는 근린생활시설 지상 주차 및 지하주차장 램프를 이용하기 위한 차량 통행이 가능하며, 일부 보차도로 혼용 사용되므로 통행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 101동 지하3층에 위치한 근린생활시설은 후석로326번길에서 차량으로 직접 진입이 가능하며, 직접 단지 내로 (근린생활시설 지하3층) 접근이 가능합니다.
- 106동 남측에 위치한 주민운동시설2은 단지 지상층과 2.2m 정도의 레벨차가 발생하여 직접적인 접근은 불가하며, 순환 산책로로 자연스러운 접근이 가능합니다.

■ 공용부/단지 내 환경

- 본 주택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문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승강기의 용량, 속도(동별로 상이함), 탑승 위치 등) 등은 사업계획승인도서의 내용에 준하며, 이로 인해 “갑”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변 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과 지구내 시설물의 변경 등으로 단지 내 아파트 동별 향, 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도로소음 등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일체의 책임이 없으며 관할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야 합니다.
- 단지 내 지하시설물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천창, 환기창, D.A(환기구) 등 - 크기는 변동될 수 있음)이 노출될 수 있으며, 단지 배치상 기계실, 전기실, 주차장, 급배기타워 및 분리수거함, 재활용 창고 등의 위치에 따라 저층부 세대의 조망권 및 환

경관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각 동별로 1층 필로티 설치로 인접 세대의 경우 소음, 프라이버시 등에 있어 다른 세대에 비해 불리할 수 있으며, 각 동 필로티 내 각종 설비용 배관 설치로 인접 세대 및 보행자에게 소음 등으로 인한 불편함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 단지 내 건립되는 보도·조경·주차장 등의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해야 하며, 이 부분에 대하여 점유 등의 권리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세대 간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각 동의 저층 세대는 차량 통행 및 보행자로 인한 빛의 산란, 소음, 사생활침해, 쓰레기 보관소의 악취, 분진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에는 어린이 놀이터, 주민 운동 시설, 학원 차량 대기 장소 및 외부휴게시설이 설치되며 이로 인해 인접한 일부 세대는 소음 등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저층부 일부 구간은 석재 및 붕철, 도장마감이며, 외벽 면의 기본 마감은 페인트로 시공되니 이를 확인하시고 계약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다음의 경우에는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사생활권이 간섭받거나, 소음피해 등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단지의 배치 특성상 동별, 향별, 층별 차이, 동 간 거리, 세대별 상호 위치 등의 상이에 따른 불편
 2. 본 계약물건의 계약체결 이후 주변 단지의 신축, 단지 내 공용 시설물 및 도로 선형의 변경, 배치상 세대 상호 간의 향이나 층에 따른 불편
 3. 공공장소인 휴게공간과 부대 복리시설, 놀이터, D/A(환기구), 천창, 관리사무소 및 경로당, 주민운동시설, 주민공동시설, 생활폐기물 보관소, 자전거보관대, 키즈스테이션(통학차량대기실), 어린이집, 근린생활시설 등의 설치 및 통행에 따른 불편
 4. 단지 내 주차입구, 부출입구, 주차 출입구,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단지 내·외 시설물 등의 설치로 인한 불편
- 102동 지하3층에는 주민공동시설(골프연습장, 피트니스센터 등) 위치하여 인근에 배치된 동은 시설을 이용하는 보행자 통행, 사용상의 소음 및 진동, 사생활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103동과 105동 사이 지상1층에는 경로당 위치함에 따라 사용상의 소음 및 사생활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101동과 102동 사이, 101동 서측 지상에는 차량 진출입 및 지하주차장 출입구 구간이 위치하여 차량으로 인한 빛의 산란, 소음, 사생활 침해 등일 발생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필히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 또는 도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02동 전면과 104동 후면 지상1층에는 어린이집이 위치하며, 옆으로는 유아, 어린이놀이터가 위치하여 인근에 배치된 동은 시설을 이용하는 입주민으로 인해 소음 및 사생활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102,103,105동 중앙에 어린이 놀이터 및 커뮤니티광장, 104,105,106동 중앙에는 어린이놀이터-2 및 주민운동시설-1, 105,106동 중앙에는 휴게정원, 106동 남측으로는 주민공동시설-2가 위치하여 인근에 배치된 동은 시설을 이용하는 입주민으로 인해 소음 및 사생활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부출입구에 인접한 101동 통학차량 대기공간 및 통학차량 회차구간이 위치하여 소음 및 매연 등의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지상층은 대지의 경사면으로 인해 약5.2~5.5m 레벨차 계단식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 지하주차장 구획이 동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레벨차로 인한 경사극복 및 단차구간이 발생되오니 견본주택에 전시된 모형 및 도면을 확인바랍니다.
- 102, 104동 북동측 지하3층(GL+89.80)에는 주민공동시설(작은도서관, 독서실, 다함께돌봄센터, 키즈카페, 코인세탁실, 피트니스센터, GX룸, 골프연습장, 다목적실, 샤워실, 주민회의실, 관리사무소, 용역원휴게실 등)이 위치하며, 전면은 테크형태로 지상층(GL+89.7) 외부에 노출되고 후면은 지하주차장과 면하고 있어 시설을 이용하는 보행자 통행, 사용상의 소음 및 진동, 사생활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102동(4호)하부 지하2층(GL+95.40)에는 게스트하우스(2실)이 위치하여 전면은 테크형태로 지상층 외부에 노출되고 후면은 지하주차장과 면하고 있어 시설을 이용하는 보행자 통행, 사용상의 소음 및 진동, 사생활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101동 동측 외부계단 측면으로 키즈스테이션(통학차량대기실)이 위치하며 전면은 테크형태로 지상층(GL+89.7) 외부에 노출되며 후면은 지하층 주민공동시설과 면하고 있으며 이를 이용하는 보행자 통행, 사용상의 소음 및 진동, 사생활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101동 북측 단지 부출입구는 지하3층주차장 출구, 근린생활시설 주차장, 어린이통학버스 회차, 대가공간이 위치하여 인접한 101동은 경광등, 소음, 매연, 전조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부출입구 차량출입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북서측 주출입구는 차량 진출입 및 지하주차장 출입등으로 이와 인접한 101동,102동은 경광등, 소음, 매연, 전조등에 의한 사생활권등의 각종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102,103,104,105동 중앙 조경시설에는 어린이놀이터, 바둑분수, 커뮤니티광장 등이 위치하고 있으며 인근에 배치된 동은 시설을 이용하는 입주민으로 인해 소음 및 사생활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104동,105동(1,2,3호),106동(4,5호) 전면(106동1,2호배면)으로는 어린이놀이터 및 주민운동시설이 위치하고 있어 인근에 배치된 104,105,106동은 시설을 이용하는 입주민으로 인해 소음 및 사생활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102동(4,5,6호)전면 및 104동 북측으로는 어린이집 및 유아놀이터가 위치하고 있어 인근에 배치된 102,104동은 시설을 이용하는 입주민으로 인해 소음 및 사생활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106동(1,2,3호) 전면에 주민운동시설이 위치하고 있어 106동은 시설을 이용하는 입주민으로 인해 소음 및 사생활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102동 동측 지하4층에는 지하저수조, 펌프실, 발전기실, 전기실이 위치하여 급배기를 위한 DA창호가 102동 동측 어린이집 하부층 커뮤니티시설 벽면에 설치되어 이로 인해 냄새 및 소음, 분진,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분양 홍보물(모형/배치도/분양 카달로그 등)을 참조하여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그 위치 및 크기, 마감재, 개소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02동 동측 및 104동 북측 지하에는 발전기실, 전기실, 저수조, 기계실이 위치하며, 급배기를 위한 DA 창호가 104동 앞 유아놀이터 서측으로 설치되어 이로 인해 냄새 및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분양 홍보물(모형/배치도/분양 카달로그 등)을 참조하여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그 위치 및 크기, 마감재, 개소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빗물재활용을 위해 101동 주변 지하 4층에는 빗물저류조 설치되어 있으며, 유지관리에 따른 비용은 공용 관리비에 포함되어 부과됩니다.
- 104,105동 지하 2층 주변 재활용/생활폐기물 보관 창고가 위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해충, 냄새 및 분진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쓰레기 수거차량의 상시 접근으로 인한 소음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2,103,104,105,106동 지붕층 상부에 신재생에너지 확보를 위한 태양광 집광판이 설치될 수 있으며, 위치는 본 공사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동 배치 및 일조량에 따라 일부 동 혹은 전체 동에 분산 설치됨)
- 102동 1호와 103동 1호 사이 주출입구로부터 단지 지상층으로 올라오는 계단 및 엘리베이터가 위치하고 있고, 102동 6호와 104동 2호 사이, 105동 2호 전면, 106동 1호 동측으로도 단지내 단차로 인하여 올라오는 계단 및 엘리베이터가 위치하고 있어 이를 이용하는 보행자 통행, 사용상의 소음 및 진동, 사생활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103동 북서측 및 102동 동측의 비상차로는 비상차량을 위한 통로로서 상시에는 102동 서측 및 북측에 차량을 통제하는 볼라드가 설치되어 일반차량 및 택배차량의 진출입은 불가합니다.
- 단지 내 지상층 레벨차를 극복하여 입주민의 이동을 위한 외부계단(실) 및 엘리베이터시설이 101동 동측, 102동 서측, 102동(6호)동측, 105동(2호)동측, 106동(1호)동측에 설치되며 이를 이용하는 입주민으로 인해 소음 및 사생활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101동(1호) 하부(지하3층, GL+89.8)에 근린생활시설이 위치하여 이로 인해 소음 및 사생활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전동 필로티 내부에는 일부구간 출입구에 인접하여 자전거 보관소가 설치되며 설치 위치에 따라 설치 대수는 각 동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지상층 외부에 일부구간 자전거 보관소가 설치될 계획입니다.
- 주출입구 지하주차장 진입 및 통로 유효 높이는 2.7m로 소형택배차의 진입이 가능하며(지하2층 주차장만 가능) 사다리차, 대형차, 대형택배차 등의 진입은 불가하며, 소형택배차의 경우라도 주차구간에 주차는 불가합니다.
- 102,103,104,105,106동 지붕층 상부에 신재생에너지확보를 위한 태양광 집광판이 설치되며, 위치는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무인택배보관함은 지하2층 주차장(101동은 지상1층 필로티)에 설치될 예정이나 설치 위치는 단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무인택배함을 사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 될 예정입니다.
- 전기차 충전소(지하2층-급속2대, 완속16대 / 지하3층-급속2대, 완속23대)는 단지 지하주차장에 위치하며, 지하 2~3층 주차장에 분산되어 설치 될 예정이며, 본 공사 시 일부 시설물의 위치 및 수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06동 3호 세대 27층에는 스카이크레인이 설치되며, 106동 인근 세대는 시설을 이용하는 보행자 통행, 사용상의 소음 및 진동, 사생활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건물의 외관 디자인 및 마감사양(색채, 줄눈 계획, 입면 패턴, 마감재, 옥상 구조물 등), 공용부 디자인(동 출입구, 지하층 출입구, 필로티, 캐노피, 주차장 램프, 경비실, 부대시설 등), 외부시설물(문주, D.A(환기구), 자전거보관소, 쓰레기보관소 등), 조경디자인, 비위치 및 내용, 난간의 형태, 옹벽 디자인 등은 설계 및 인허가 조건 이행, 사업주체협의를 따라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으며, 당사의 고유한 업무영역으로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각 동의 주출입구는 주변 여건에 따라 위치, 크기 및 구조형식 등이 동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지하 주차장과 엘리베이터 홀이 직접 연결되나 동별로 주차장 접근성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설치 예정인 쓰레기 분리수거 보관시설은 동별로 이용 거리에 차이가 있으며, 인접한 세대의 경우 해충, 냄새 및 분진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쓰레기 수거차량의 상시 접근으로 인한 소음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근린생활시설 지붕층 또는 외부에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주변 인접 동(101동)에 소음 및 진동이 전달 될 수 있으며 위치 및 크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용시설용 (주민공동시설 외)배기시설 및 에어컨 실외기 설치에 따라 근접 세대는 미관, 소음, 바람 등으로 생활에 불편을 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주차장 및 펌프실, 전기실 등의 환기와 제연팬의 급기/배기를 위하여 D.A(환기구)의 지상 돌출물이 각 동 계단 또는 지상층 필로티 내부 등에 설치될 예정이며, 이로 인해 냄새 및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분양 홍보물(모형/배치도/분양키달로 등)을 참조하여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그 위치 및 크기, 마감재, 개소는 변경 될 수 있고 이로 인한 환경권 및 사생활권, 조망권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필로티가 설치되어 있는 일부 동의 필로티 옆, 필로티 상부층 세대는 외부 통행에 의한 사생활 침해, 소음발생 등 불편의 우려가 있으며, 필로티 위층세대의 바닥 난방의 효율이 떨어질 수 있음 또한, 낙하물 방지를 위한 캐노피가 추가 설치될 수 있고 캐노피의 형태, 재질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 동 호에는 이삿짐용 사다리차 접근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배치도의 대지경계선, 구역경계선, 법면 현황은 최종 측량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내부 도로 및 조경 구간, 각 시설의 명칭 및 내용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동의 위치 및 동, 층, 호수에 따라 코아 및 주출입구 부분의 평면, 단면, 창호 형태 등의 계획은 동별 위치에 따라 서로 상이할 수 있고, 계획에 따라 이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계약 전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계약 이후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거동의 동, 호수, 층별 위치에 따라 난간턱의 높이, 난간대의 형태 및 재질, 색상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일부동은 필로티가 설치되며, 필로티의 층고는 각 동마다 상이할 수 있으며, 동일한 층이라도 바닥 레벨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일부 동은 호수별 최고층수가 다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같은 라인이라도 층별 공용홀의 구조 및 형태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요 구조체는 정밀구조계산에 따라 최적화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내력벽은 비내력벽으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조경 공간의 형태, 도로의 선형, 포장 계획, 세부 식재 위치 등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부 포장의 재료, 패턴 및 색상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및 아파트 내 공용시설(엘리베이터, 주차장, 편의시설, 주민공동시설 등)의 경우에는 동별 위치에 따라 이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계약 전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계약 이후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엘리베이터가 면한 세대는 소음 및 진동이 발생될 수 있으니 계약 전 확인하기 바랍니다.
-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 창호의 규격, 설치 위치는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동의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 등에 창호가 설치되는 경우 창호크기가 협소하거나 창호위치에 따라 부분적으로 채광 및 환기가 제한됨을 사전에 인지하여야 하며 개폐가 불가한 창호로 시공됨. 단, 일부층에 한하여 개폐가 가능한 창호로 시공됩니다.
- 각 세대의 주 출입구,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 등의 공간은 주거 공용부분으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각 세대별 동 조합에 따른 동 평면상의 굴곡에 따라 인접 세대에 의해 일조량이 제한될 수 있으며, 사전에 기본주택 모형 및 도면을 통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 수목의 높이 및 직경 등은 모형 및 CG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수목 식재, 생활폐기물 보관소 등으로 인해 저층부 세대의 조망권 및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시설물의 설치 위치, 규모, 내부 계획 등은 현장 상황에 따라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동 및 부대 복리시설의 외관(입면, 창호, 난간, 로고 등의 형태 및 색), 공용부분의 계획(조경, 주동 출입구, 지하 출입구 등)은 실제 시공 시 설계 개선, 시공성, 편의성, 구도 등의 개선 사유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입주자에게 별도의 동의 절차를 받지 않습니다.
- 단지에 설치되는 놀이터 내 놀이시설물 및 주민 운동 시설의 실의 운동 시설은 자재 및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외부에 사용되는 각종 자재의 경우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입주자에게 별도의 동의 절차를 받지 않습니다.
- 지하주차장 천장은 각종 배선 및 배관이 노출됩니다.
- 지하주차장은 입주자 전체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차장으로 각 동별 세대별로 주차 라인을 지정하여 주차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 및 기타 공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피트 부분 등의 면적은 변경 사용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현재의 배치, 차량 동선에 의하여 동별 주차 배분, 동 출입구 개수, 출입 동선의 길이 등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또한, 일부 구간에서 교차로가 형성되며, 교차부에서는 보행자 동선과 차량 동선의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주동 옥탑 창호의 위치 및 크기는 본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옥상 구조물은 본 공사 시 형태 변경 또는 구조물 지지를 위한 기둥이 추가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단지 인접 도로의 폭/선형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인접 부지와의 관계로 인한 도로 레벨 조정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측벽 로고 및 동호수 사인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 취향 민원에 의한 변경 사항이 될 수 없습니다.
- 단지 보행자 출입구는 단지 레벨 등의 사유로 일부 단차가 지는 구간이 생길 수 있으며, 단지 내 교차로 끝부분은 점자 블럭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보안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CCTV에 의하여 프라이버시의 침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미술 장식품 설치는 설치 계획 심의를 득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위치, 형태, 크기 등은 추후 결정되며, 이에 따라 외부 공간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미술 장식품 설치는 문화예술진흥법[시행 2023. 12. 21.] [법률 제19480호, 2023. 06. 20., 일부개정] 제9조 제2항에 의거하여 미술차시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수경시설 및 경관조명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부 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놀이시설, 휴게시설, 수경시설, 운동시설, 포장시설, 수목관리, 정기점검, 수질검사, 소독, 안전관리 요원 배치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단지 조경(식재, 조경시설 등 포함), 바닥포장, 저층부 외벽 마감, 동 환관, 지하 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면적, 위치, 규모, 재료, 형태, 색채, 수량 등이 현장 시공 시 카탈로그 및 모형과 다르게 설치 될 수 있으며(단, 규격이나 수량의 변경이 있을 시 당초 계획보다 동등 이상으로 시공됨), 관계기관 심의 결과, 시공과정 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고 상기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관계 법령의 변경, 인허가 과정 및 실 시공 시, 외관 개선을 위하여 건물 외관(지붕, 옥탑, 전후면 외관, 축벽, 동출입구, 발코니 앞 장식물, 창틀모양 및 색, 색채), 난간의 형태 및 높 이, 부대 복리시설 등은 입주자의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아파트 축벽 문양은 현장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저층부 입면 몰딩 및 일부 구간 석재 설치에 따른 입면 돌출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축벽 및 옥상에 설치되는 경관 조명으로 인해 일부 세대에서는 눈부심에 의한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

- 각종 홍보물 상의 평면도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및 시아버모델하우스, 기타 홍보물의 가구 및 각종 내부 마감재는 실제 색상 및 패턴과 상이할 수 있으며 공급업체 사정에 따라 견본주택에 설치된 제품과 상이한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나, 동급 이상으로 설치됩니다.
- 세대 내 설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의 다양한 두께로 인하여 안목차수가 도면과 상이할 수 있으며 전용면적은 안목차수로 산정하며,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 면적이 상이할 수 있으며 견본주택과 달리 좌우대칭 평면이 있으니 계약 전 확인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천장 높이는 2,300mm로 시공됩니다.
- 저층 세대의 외벽 마감재 설치에 따라 외부 창호는 다소 축소 및 변경될 수 있으며, 벽체 두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각 세대는 화재 시 피난을 위한 하향식 피난구가 실외기실에 상,하부 교차 설치되고, 상부에는 하향식 피난구 옆으로 기계환기 장치가 설치되며, 비상시 하향식 피난구 사용을 위해 물건 적치를 금지하며 항시 실외기실 출입문은 닫힌 상태로 유지하여야 합니다.
- 옵션 선택에 따라 조명기구, 배선 기구의 수량 및 설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 고정형 가구(신발장, 침실 붙박이장, 주방가구, 욕실장 등) 설치 부위의 비 노출면(천장, 벽체, 바닥)은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발코니 확장에 따라 외부 창호가 설치된 발코니 외벽에는 단열재 및 마감재가 설치되며(실외기실, 발코니1, 발코니2 제외) 설치부위와 재질은 발코니별, 주택형별로 다를 수 있음 또한 실제 발코니 면적보다 실사용 면적은 줄어들어 시공됩니다.
- 확장하지 않은 발코니(실외기실, 발코니1, 발코니2)는 준 외부공간으로서 난방 시공 및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으므로, 내·외부 온도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에 의한 마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보관된 물품은 훼손될 수 있으니 빨래 건조, 가습기 등 사용 시에는 수시로 새시침을 열어 실내공기를 자주 환기시켜 결로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부분의 외부 창호는 PVC재질로 설치되고 창호 사양(제조사, 브랜드 및 창틀, 하드웨어, 유리, 프레임사이즈, 손잡이, 색상 등)등은 본 공사 시 입찰을 통해 선정되며, 공급업체 사정에 따라 견본주택에 설치된 제품과 상이한 타사제품으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우물천장과 걸레반이는 본 시공 시 하자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PVC 위 래핑으로 시공될 수 있습니다.(견본주택의 시공 자체와는 상이할 수 있음)
- 세대 내부의 욕실 단차는 바닥 구배 시공으로 인해 준공도면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침실 내부로 물 넘김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되었으며, 이로 인해 욕실 출입 시 문짝에 의한 신발걸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욕실 출입문(부부, 공용)은 본 공사 시 ABS 도어로 시공됩니다.
- 비내력 벽체는 실별에 따라 습식, 건식 또는 골조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마감재 내용은 주택형별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 인쇄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각 세대 간 경계벽 및 바닥구조(중간 소음 등)는 공동주택 바닥 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을 준수하며 중간소음·진동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하자보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준공 후 입주주민의 인테리어 공사 시행으로 인하여 기 시설물을 임의로 해체 또는 파손 시 그에 따른 시설물의 기능 및 사용상의 문제는 하자보수가 불가하며, 방법상의 문제가 발생 시 책임은 입주자 부담입니다.
- 아트월 벽면에 벽걸이 TV 설치를 위한 못 박음이나 드릴을 이용한 작업 시 전기·통신용 매입 배관 및 냉매 배관(드레인포함)이 파손될 수 있으니 설치 전에 관리사무소에 확인 또는 시설물 안내서의 유의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거실 아트월 및 주방 상판, 벽체 등에 사용되는 타일 또는 엔지니어드스톤(유상오펜)은 자체의 특성상 색상과 패턴이 균질하지 않을 수 있고, 본 공사 시 제품의 특성상 상판 및 벽체는 접합부에 조인트가 발생할 수 있으며, 견본 주택에 설치된 자체와 색 상 및 석재의 결은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본 공사시 현장 여건에 따라 제조사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색상 및 재질 변경 없음, 동급 이상 적용) 공장 생산 자체(타일 등)의 경우, 자체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해 결정합니다.
- 일부세대는 공사 시행 중에 품질관리를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인·허가 과정 및 실제 시공 시 사용성 개선을 위하여 주방가구 및 일반 가구, 수납공간의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마감재(내/외부) 치수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설치되는 액세서리(휴지걸이, 수건걸이, 수전류 등) 및 기기(선풍통, 설비 및 전기 각종기기) 등의 설치 위치, 개소 등은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욕실에 바닥난방이 적용되나, 샤워부스 바닥 및 욕조 하부에는 바닥난방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 실내 점검구는 설비공사 등의 유지관리를 위해 수량이 증감될 수 있으며, 사양 및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가스 배관 일부가 주방 벽면 및 주방 상부장 상단에 노출될 수 있으며, 주방가구 일부를 사용하여 주방과 내부 공간이 축소될 수 있습니다.
- 가스쿡탑 주변 주방 상판에 가스 점검을 위한 점검구 또는 점검용 홀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전기쿡탑 옵션 선택 시에는 기본으로 제공되는 가스배관과 가스쿡탑은 설치 되지 않습니다. 가스배관은 다용도실에 설치된 가스계량기까지만 설치됩니다.
- 발코니2 2단선반은 본 공사시 가스계량기 위치에 따라 설치 위치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계약자가 사용 또는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이 가구 등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 불가할 수 있으니 사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및 욕실의 경우는 상부층 세대 배관 점검 및 보수를 위해 부득이 하부층 세대에서 천장 배관을 점검할 수 있으며, 다용도실 천정에는 배관이 노출되어 시공됩니다.
- 발코니1에는 바닥 배수를 위한 배관이 노출되어 시공됩니다.
- 복도 및 세대 전유 공간 천장 내부는 기계설비 및 전기시설물의 경로로 사용 될 수 있습니다.
- 주방 렌지후드에는 소방법규에 따라 자동식소화기가 설치되며 렌지후드 덕트 커버 사이즈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온수 분배기가 설치되는 주방 싱크대 하부장 내부는 공간이 협소할 수 있습니다.
- 식탁용 조명기구의 위치는 일반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위치(견본주택 설치 위치)에 시공되며, 위치 변경은 불가합니다.
- 본 공사 시 주방, 욕실, 발코니 타일 나누기 및 단차는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타일은 고유한 물성에 의하여 흠발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 금속 도어(현관 방화문, 실외기실 방화문)의 프레임 및 손잡이는 사이즈, 형태, 색상, 위치 등이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 그릴 창은 외관 디자인 통일을 위해 색상 및 사이즈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 설치 공간의 크기는 단위세대 주택형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같은 형별에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 그릴 창호는 화재 예방을 위해 하절기에는 상시 개방하시기 바랍니다.
- 실외기실 내부는 물건 적재장소가 아니므로 적재 시 에어컨 효율 저하 및 결로에 의한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실외기 가동으로 인해 냉각수가 바닥에 고일 수 있음)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과 발코니 창호의 형태, 높이, 색상 및 사양은 가능 및 미관 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시공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팬트리, 드레스룸 등 옵션 선택 사항에 따라 천정에 설치되는 조명 종류가 변경되거나 작동 스위치가 추가로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세대 외부난간 형태 및 높이, 색상은 실시공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비스포크 냉장고(유상옵션) 패널색상은 예시 제품이며, 입주 시점에 사용자의 기호에 맞게 패널 색상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단, 입주시점에 제품의 출시, 단종으로 인하여 패널 색상 선택에 제약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 본 아파트 각 단지 내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됩니다.
- 부대 복리시설은 관계 법령(주택 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적법하게 계획됩니다.
-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인승, 속도, 탑승 위치 등)은 사업계획승인도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실제 시공 시 성능 및 미관 개선을 위해 관련법에 근거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인해 시행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부대 복리시설 시설물은 동선/성능 개선 및 인허가 의견 등의 사유로 실 시공시 위치 변경, 다른 실로의 변경·통합, 동선 변경, 입면 형태(색채, 재질, 간판 형태 모양) 변경, 실내구획 변경 될 수 있으며, 분양 이후 설계변경 필요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측량 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 및 지반레벨(계획고)은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하부 부대복리시설, 지하층 충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위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 복리시설은 사업주체가 설치해주고 운영 및 관리 등은 준공 후 입주자 부담으로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인수, 인계하기 전까지 위탁관리를 할 수도 있음 또한, 근린생활시설을 제외한 부대 복리 시설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분양 홍보용 CG, 견본주택 내 모형 등에 표현된 부대복리시설의 실 내부구성 및 운동기구, 가구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서 추후 입주자의 운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부대 복리시설의 실 명칭은 추후 실 용도의 성격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관련 법규 등으로 인해 시설물의 크기, 위치, 사양, 단차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경로당, 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키즈스테이션(통학차량 대기실) 주민공동시설, 게스트하우스, 스카이라이프 등 부대복리시설은 기본 마감만 제공되고 집기류는 포함되지 않으며, 사업승인 도서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 단지 내 부대시설 이용에 대하여 각 동별 계단실 등의 위치에 따라 거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배치 및 이용여건 등에 대해 충분히 확인 바랍니다.
- 일부 실에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관리사무소, 경로당, 주민공동시설 및 어린이집 등 부대복리시설의 실외기 설치로 인한 인근 세대 경우 소음 등의 환경권(일부세대는 조망권 침해될 수 있음) 간섭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분양자료 등의 시설물 안내도를 계약 시 반드시 확인 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민공동시설과 인접한 102동 저층부 세대는 주민공동시설 내 운동시설(휘트니스센터, 골프연습장 등)을 이용하는 소음 및 진동, 사생활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스카이라이프와 인접한 106동 세대는 스카이라이프를 이용하는 소음 및 진동, 사생활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학교 및 국·공립어린이집

- 본 아파트 복리시설 내에는 「주택법」 제35조에 따라 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설치되며, 해당 어린이집 시설은 「영유아보육법」 제12조 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9조의3, 보건복지부 「신규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관할 지자체(지자체에서 선정한 위탁체 포함)에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는 아파트 사용검사 신청 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다만, 입주(예정)자 등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이에 찬성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은 설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단지에 배정된 초등학교는 101동 기준 북동측으로 약 200m 떨어진 곳에 만천초등학교입니다. 그러나 본 아파트 입주시에 입주 물량 증가 등으로 인해 배정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지 초등학교의 통학구역, 중학교 학구군 및 중학교는 강원특별자치도 춘천 교육 자원에 문의 바랍니다.

■ 근린생활시설

- 근린생활시설의 대지 지분은 별도 산정되어 있으나, 단지 내 아파트 부지와 별도의 대지 경계선으로 구획되지 않으므로 향후 각 대지 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은 별도의 분양시설로서 근린생활시설의 건물권리는 근린생활시설의 수분양자들이 하여야 합니다.
- 근린생활시설의 외관과 내부 건축계획의 변경은 아파트 계약자와 무관하게 설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은 상업시설의 영업을 위한 화물차 등의 입, 출차 및 이용자들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부출입구 측 101동(1호) 하부(지하3층, GL+89.8)에 근린생활시설이 위치하여 근린생활시설 전면 북서측에는 근린생활시설 전용 지상주차(일반3면)구간이 설치되며 차량통행으로 인한 빛의 산란, 소음,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 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필히 견본주택에서 설치된 모형 또는 도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부출입구에 면한 101동 지하3층에 근린생활시설이 위치하고 있으며, 부출입구 주변 근린생활시설 전용 지상주차(일반3면)구간이 위치하여, 차량통행으로 인한 빛의 산란, 소음,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 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필히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 또는 도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근린생활시설은 1개 층으로 구성되어 부출입구에서 근린생활시설 전용 주차장의 주차 차량진입과 보행자 진입이 가능합니다.
- 101동 저층 세대는 근린생활시설 근접으로 인하여 사용상의 소음 및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계획은 동선, 기능, 성능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 견본주택 내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과 전시품, 옵션 품목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나, 본 공사 시에는 전시품은 설치되지 않고, 옵션 품목은 유상으로 추가 선택 시에 설치되오니, 견본주택을 관람하시고 분양가에 포함된 품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감지기, 유도등, 스프링클러, 환기구, 소방감지기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견본주택 내 임시 시설물로서 본 공사 시 인·허가 도서 및 소방법 등 기준에 의해 시공됩니다.
- 견본주택의 배선기구, 조명기구, 월패드, 통신 단자함, 세대 분전반, 가스 배관 및 계량기 위치는 본공사 시 설계도면 기준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단위세대 내부에 설치된 인테리어 소품, 가구(커튼, 침대, 소파 등), 디스플레이 가전제품, 디스플레이용 조명, 기타 전사용품 등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용으로 입주 시 제공되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일부 조명, 스피터조명은 전사용이므로 계약 전 확인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에어컨, 욕실 점검구, 온도조절기, 환기디퓨저, 냉매매립박스 등 규격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및 단지 내에 적용되는 모든 자재 및 제품은 시공 시기의 생산 여건에 따라 자재품질, 품귀, 생산 중단, 제조회사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와 신제품 개발 시에 한해 동질 이상의 타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서 확인이 곤란한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부 계단 및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홀, 승강기의 인승, 속도, 탑승 위치) 등은 사업계획승인 도서의 내용에 준하며, 이와 관련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견본주택 건립 타입(84A,84C)의 내부 차수 및 마감재의 사양은 견본주택 건립 타입과 상이 할 수 있으므로 별도 안내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 모형, 커뮤니티(부대시설) 모형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주동 및 저층부의 입면의 색상, 형태, 조명 연출은 실시공 시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지 주변 상황, 공사 시 필요한 설비기기, 배관, 배선 등과 출입 문은 표현되지 않습니다.
- 본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 모형의 저층부 외부 마감은 석재와 붕칠, 수성페인트가 혼용되어 마감되며, 특화계획에 따라 입면의 디자인 및 마감재의 종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의 연출용 시공 부분, 카탈로그, 기타 홍보물 상 조감도 또는 사진은 당사에서 연출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업승인 도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창호(프레임, 유리 등) 및 도어는 견본주택 설치를 위해 생산된 제품으로 본 공사 시 동급제품으로 입찰을 통해 시공됨에 따라 견본주택에 설치된 브랜드, 유리스펙, 표현문구 및 프레임, 손잡이 등의 하드웨어는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마감표면재(벽지, 시트, LPM, PET, 마루 등)는 제품 생산 시점에 따라 미세한 색상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강마루 시공 패턴 및 나누기도는 본 공사 시 현장 여건에 따라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으며, 마루의 특성상 색상, 무늬 패턴 차이와 옅이는 자연스러운 것으로 하자가 아닙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욕조, 현관디딤석, 욕실 뒷선반, 화장대 상판 등의 인조석은 견본주택 설치를 위해 생산된 제품으로 본 공사 시 동급 제품으로 입찰을 통해 시공됨에 따라 견본주택에 설치된 제품과 브랜드, 디자인, 패턴 등이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목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등 마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치수 등은 실제 시공 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배선기구, 조명기구, 일괄 소등 스위치, 월패드, 디지털 도어락, 현관 도어폰 등은 제품의 성능, 디자인 및 기능 개선을 위해 제품 사양, 위치, 수량 등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의 각 평면은 옵션 사항을 적용하여 시공하였으며, 품목별 옵션 선택 여부에 따라 콘서트, 스위치, 조명 등의 타입 및 수량, 설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계/전기분야

- 발코니에는 수전, 드레인 및 선홍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가 있으며,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 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입주 후 시스템에어컨을 입주자 개인적으로 설치 시 공간이 협소하여 배관 설치가 어려울 수 있으며, 냉매배관 및 드레인 배관 등이 외부(발코니 등)로 노출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노출 배수 배관으로 인한 미관 지장 및 배수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 내부에 우수 배수배관 이 설치되어 우천 시 배수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사용하는 전기를 공급하는 전기 분전함 및 통신단자함이 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 따라 노출 설치되오니 사전에 견본주택의 노출된 부위를 확인 바랍니다.
- 스프링클러 및 소방감지기, 소화기는 견본주택 소화 시설물로서 본공사 시 설계도면 및 화재안전기준에 의해 시공됩니다.(본 공사 시 상기 사항 적용에 따른 일부 마감 사양, 우물천장, 커튼박스, PL창호, 주방기구 등이 변경 될 수 있음)
- 동파가 우려되는 설비배관에는 동파 방지를 위한 열선이 적용되며 이에 따른 전기료가 공용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됩니다.
- 세대 전열교환기는 실외기실에 필터 교체 및 유지 관리를 위해 장비와 연결 덕트가 노출로 설치되며, 가동 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냉장고 급수용 배관은 공배관으로 설치되며, 사용자가 부속을 사용하여 급수분기하고 배관 삽입 및 연결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 발코니에 수전이 설치되는 곳은 겨울철 동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창문 닫기 및 보온 조치 등 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 욕실에는 배수를 위한 바닥 배수구와 환기를 위한 욕실팬이 설치됩니다.

- 세대별 기계 환기 방식이 적용되며, 옵션 선택 시 기계환기 장치의 사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평면의 배치 및 구조에 따라서 각 세대별 전용 부위 및 공용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배관 및 배선은 시공방식 및 길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설비 통기배관, 경관조명, 위성안테나, 공청안테나, 이동통신 중계기, 피뢰침 및 피뢰설비, 태양광 발전설비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명 및 빛의 산란에 의해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의 인승, 속도 등은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으며(법적 기준 내) 이로 인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가 및 부대복리시설의 실외기 시설이 외부 조경 공간, 1층 또는 옥상 외부공간에 설치될 수 있으며, 그 설치 상세 계획은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방송 통신 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 24조의2제4항에 의거하여 구내용 이동 통신 설비의 협의 결과에 따른 설치 위치를 아래와 같이 게시합니다.
 - 가. 단지내에 기간 통신 사업자의 이동 통신 중계기 및 옥외 안테나가 설치 될 예정이며, 본 공사 시 우수한 통신 품질이 제공될 수 있는 위치로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나. 이동 통신 설비 설치 예정 위치
 1. 옥상층 : 102, 104, 105동
 2. 지하 주차장 : 102, 105동 지하 2층 PIT
- 전기차 충전소는 지하 2층, 3층 주차장에 위치하며 101, 102, 103동 지하 3층 주차장, 102, 103동 지하 2층 주차장에 설치될 예정이며 본 공사 시 시설물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설계 관련 변경 사항

- 본 아파트의 기능 및 구조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제5항에 의거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주체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허가를 진행하며,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 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준공 전·후 최종 사업승인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 아파트의 현장 여건 및 구조/성능/시공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법규(건축법, 주택법 등)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공사 시 추가 지질조사 및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시설 및 구조방식, 기초의 형식 등은 변경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시설물의 위치, 규모, 외관 및 색채, 단지 명칭, 동 표시 등은 측량 결과 및 각종 평가 심의/협의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해 사업에 사용된 사업주체의 브랜드 등은 향후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실 수 없습니다.
-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 분야별 도서 또는 홍보물 상호간 오류로 인하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 확인하시기 바라며, 공사용 도서의 구체화 (세부 도서작업) 과정에서 인허가도서의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수정 및 성능개선과 품질 제고를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시행자에게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옥실, 발코니 등에 설치되는 바닥 배수구, 수전, 우수 선홍통, 보일러 등은 위치 및 형태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시행자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상에 설치되는 지하주차장 환기용 그릴창, 제연용 그릴창, 옥외 계단, 옥외 경사로 및 지하층에 설치되는 기계실, 전기실, 저수조, 환풍 등은 본 시공 시 위치 및 크기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실제 시공 시 대지면적, 연면적, 용적률, 주차대수 및 조정면적, 자연 지반면적, 인공지반 녹지면적 등은 축소 또는 증가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대지 경계 및 면적은 지구단위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등으로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 시 대지 경계 및 지적 확정에 따른 대지면적 정산 처리시 입주자는 동의하여야 합니다.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조경(식재, 시설물, 공간계획, 포장 등)은 설계변경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모형, 조감도 등에 표현된 단지 외부 횡단보도, 보도, 점자블럭 등의 사항은 본 시공 시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측량 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가 경미하게 변경 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지하층 충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 위치 등이 다소 변경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변 도로의 경사도 및 대지의 레벨차이에 의해 도로와 본 건물의 레벨 차이가 있으며, 단지 내 도로의 경사도는 시공 중 주변도로의 경사도 및 레벨에 순응하기 위하여 일부 조정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소방시설 및 환기구(급/배기)는 본 공사 시 형태 및 설치 위치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분양계약서의 일부로 구성되며, 청약자는 필히 본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본 입주자 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 또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하며 본 공고와 공급(분양)계약서 내용이 상이 할 경우 공급(분양)계약서가 우선합니다.

■ 홈페이지(사이버모델하우스) : 춘천 동문 디 이스트 어반포레 홈페이지(www.chuncheon-dmapt.co.kr/)

■ 견본주택 위치 및 분양문의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은의동 308-6번지 ☎1588-0654

특별공급 청약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2025. 08. 04(월)
일반공급	1순위 청약	2025. 08. 05(화)
	2순위 청약	2025. 08. 06(수)
당첨자발표		2025. 08. 12(화)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사전 자격확인서류 제출		2025. 08. 18(월) ~ 2025. 08. 20(수)
정당계약		2025. 08. 25(월) ~ 2025. 08. 27(수)

총 569세대 (전용 59㎡ 84㎡ A, B, C, D) 분양문의 (☎1588-0654)

시행수탁 : 우리자산신탁(주)

시행위탁 : (주)씨앤위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온의동 308-6번지

시공 : 동문건설(주)